

제 1 장 명예훼손 사례

❖ 사 례 1

모 중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4대전조정1, 2014대전조정2(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권○○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중도일보, 인터넷 중도일보)
중 재 부 대전중재부
접 수 일 2014. 01.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전 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등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아 과실 책임을 물어 교육청이 학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의 부모인 신청인은 당시 검찰과 경찰이 성폭력 혐의부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며, 학교 성폭력 발생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결정으로 학교 측의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중도일보에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조정대상기사 및 반론보도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중도일보 -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제하의 기사 (2013년 11월 19일자 사회면, 인터넷 중도일보 11월 19일자 사회면)

- **내 용** - 대전교육청과 ○○중이 지난해 학생 간 성폭력 의혹사건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청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신고 시기를 지키지 않아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고 ○○중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견해다.

○○중은 최근 대전교육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사, 특수실무원, 전문상담교사 등 5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성폭력 문제와 관련, 교육청이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한 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담겼다.

○○중 측은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불처분 결정’, ‘범죄 인정 안됨’ 등 판결을 내렸음에도 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 법무부, 교육청이 발간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중 교장은 “가이드북의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설문조사 등 사실확인을 통해 당시 주장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행정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항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해서도 “발생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심이 갈 때”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측 의견과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상급기관인 여성가족부로부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유권해석도 받아놓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가부에서 성범죄발생사실의 유·무죄를 떠나 학교의 사안처리 성범죄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1차 협의를 진행했으며, 추후 2차 회의를 열고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중도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중도일보(<http://www.joongdo.co.kr>) 홈페이지 사회/교육면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중 성폭력사건 즉시신고의무 위반’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0일자 사회면에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범죄 인정안됨’ 등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혐의 없음’, ‘범죄 인정안됨’ 등의 판결이 아닌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중학교장 최○○가 교육부·법무부·교육청이 발간한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처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이드 북 매뉴얼대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북을 확인한 결과,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의무적인 것이기에 ○○중학교장 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학교의 위법함이 인정되어 대전시 교육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 본지는 위 기사에서 ○○중에서 논란이 된 교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최○○ 교장이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 것이 아니고, 학교 성폭력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며, 사건 발생 이후 최○○ 교장이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4. 1. 23. 09:00부터 인터넷 중도일보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11190333)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고, 2014. 1. 27. 09:00 이후부터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은 2014. 1. 27. 09:00시 이후부터 [알려왔습니다] 2013년 11월 20일자 6면(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11200256)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4. 2014. 1. 27. 09:00시 이후부터 중도일보 커뮤니티 블로그(http://blog.naver.com/joongdo_news?Redirect=Log&logNo=9018503716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ongdo_news&logNo=90185036434)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링크를 삭제한다.
5.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1.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중도일보 - 『○○중-대전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신고의무 놓고 ‘대립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1월 23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 례 2

해외에서 의류제조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인근 군부대의 사령관과 유착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64~2014서울조정66(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통상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4. 01.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봉제공장 노동자 임금인상시위 대규모 유혈진압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신청인 회사의 현지법인과 시위진압에 참여한 캄보디아 911부대가 공장 부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분을 나누는 사이라고 보도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인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 지분 역시 100%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등 현지 군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대규모 임금인상 시위에 해당 법인의 노동자가 다수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인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공장 노동자가 시위에 참여한 것처럼 보도되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의 인터뷰 내용은 타 매체에서도 인용될 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중재부가 우리나라와 외국 현지의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군부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한겨레21** - 『기업의 양탈에 충알이 발사되었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1일자 28~29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20일자 사회면)
- **내 용** - 바다 건너 캄보디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떼어난 봉제노동자들이 일어섰다.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달라고 외쳤다. 공권력은 곤봉을 휘두르고 총부리를 겨눴다. 노동자 여섯이 숨졌다. 폭력 사태가 일어난 곳은 하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장 앞. 저임금, 노동 착취, 유혈 진압 등 잊고 싶었던 말들이, 1970년대 대한민국 동대문 청계시장을 가득 채웠던 말들이, 2014년 동남아시아를 떠돈다. ‘한국’이란 말과 함께. 한국의 기업들은 왜 ‘인권 경영’에서 형클어진 걸까.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 사태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만국의 노동자’를 거느린 한국 기업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들여다봤다. _편집자

지난 1월2일 캄보디아 프놈펜 남서쪽에 있는 산업단지 ○○○○ 공단 정문 앞에서 100명 가량의 봉제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 공단 내 한국 기업인 ○○○○ ○○○○○(이하 ○○) 노동자인 ○○(24)도 동료들과 함께 춤을 쳤다. “부자를 위해 비싼 옷을 만든다”는 ○○은 2년 전 월급 75달러로 일을 시작해 지금은 기본급이 85달러까지 올랐다. 수당까지 합쳐 평균 월수입은 130달러 정도다. 주문량을 맞추느라 한 달에 최소 절반 이상 잔업을 해야 하는 이 회사는 잔업수당으로 1시간에 50센트, 우리돈으로 550원가량을 지급한다. 보너스는 노동자에 따라 5~10달러를 오가고, 교통비는 5~7달러 수준. 의료수당 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아침 7시인 출근 시간을 단 한 번만 어기더라도 몽땅 날아간다. 일부 동료들이 아침 6시30분부터 나와 일을 시작하는 이유다. 식대는 없다. <한겨레21>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한 1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점심 식대를 받는 노동자는 공항 근처 한국 기업인 ‘캠바코톱 주식회사 넘버원’에서 일했던 히엔첸다(37)뿐이다. 그녀가 회사로부터 받은 점심값은 한 달 3달러, 하루 10센트(약 110원)뿐이다.

“매달 60~70달러는 빌려야 겨우 살까 말까다.”

○○이 1월 2일 아침 춤을 춘 이유다.

춤추는 노동자들을 향해 헌병들이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한 건 오후 3시30분께. 아무런

경고조차 없었다. 공단 정문 앞에 도착한 10대의 트럭은 곤봉을 든 헌병들을 쏘아내기 시작했다. 헌병들은 오후 5시까지 곤봉을 휘둘렀고, 폭력 사태는 이튿날 새벽 3시께까지 이어졌다.

“그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뱅스렝 도로 위 ○○○○ 공단 주변을 둘러봤다. 폭력 진압으로 분노한 노동자들 틈에 술에 많이 취해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무리가 마구 섞여 있었다. 노동자들이 쉽게 편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비정부기구(NGO)인 커뮤니티법교육센터(CLEC)에서 노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톨라모운의 말이다. 그리고 새벽 1시께 톨라모운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루탄이 발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1월3일, 날이 밝았다. 전날의 폭력 사태에 분노한 ○○○○ 공단 노동자 1만 명가량이 오전부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아침 8시부터 내무부를 향해 행진하던 시위대가 200m쯤 갔을까. 불현듯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대로에 있던 헌병이 발포하기 이전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부상자가 생겼다. 누가 총을 쏘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저격수였다. 총소리의 진원지 중 하나인 공단 정문 건너편 ‘에크릭 넘버원’ 시장의 지붕 위, 전투복을 입고 AK47을 들고 있던 저격수. 1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뒤편으로 다가가 엎드린 채 노동자들을 겨누고 있는 저격수를 붙잡아 흠뻑 구타했다. 그즈음 주변은 돌과 총알이 교차하는 폭력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공단 주변에 산재한 노동자들의 숙소 안으로도 총알이 날아들었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부상자가 속출했다.

총알 하나가 ○○의 오른쪽 다리에 파고들었다. ○○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오토바이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의사는 없었고, 간호사들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할 뿐 응급처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 시각, 시위와는 관계없이 병원을 찾은 여성 한 명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여성이 되돌아 오는 길에 끝내 숨지자 분노한 노동자들은 병원을 향해 돌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한겨레21> 취재진이 병원을 찾은 1월16일, 병원 간판은 이름조차 읽기 어려울 만큼 망가져 있었다.

전세계를 경악시켰던 이번 캄보디아 유혈 사태는 1월2일 정오께 한국 업체인 ○○통상 앞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발단이 되었다. 프놈펜 서쪽 4번 국도에 위치한 ○○통상

앞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공장 밖 파업을 벌였고, 일부는 조업 중이었다. 파업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안에 있던 군인들이 나와 파업 노동자 중 3명을 안으로 끌고 가 구타했다. ○○통상과 부지를 공유한 911 공수부대원들이었다.

군인들의 폭력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속속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승려 5명을 포함해 15명을 연행해갔다. 그날 오후 승려는 풀려났지만, 나머지 10명의 노동자들은 911 공수부대 안 감호소에 만 하루 동안 감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캄보디아봉제노동자 민주노조연대(CCAWDU) 아툿 의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감호소에 갇힌 노동자 대부분이 의식을 잃을 만큼 구타를 당했고 그중 한 명은 골절상을 입었다. 다음날 노동자들은 법원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이송됐다.

○○○통상 앞 진압 과정은 몇 가지 의혹을 낳았다. 우선 진압 인물들을 보자. 현장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차프소포르 소장은 911 공수부대의 총지휘관이자 인권침해로 악명 높은 차프페아크데이 소장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2010년 자료는 차프페아크데이 소장을 “1998년 선거 뒤 폭력 사태와 1997년 당시 쿠데타를 이끌었던(훈센과 정적 관계이던) 푼신펙당의 사령관들을 고문하고 총살시킨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라 묘사하고 있다. 1월16일, <한겨레21>이 한국의 노동시민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독립조사단’과 공동 인터뷰한 911 전 부대원 모니(가명) 역시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잔혹상을 진술한 바 있다. 예컨대 부대 소속 하급 병사들을 발가벗긴 채 구타하는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는 게 모니의 증언이다. 여러 해에 걸쳐 911 공수부대 교관 노릇을 해왔던 미국은 인권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2010년 이래 군사훈련 교육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구국당(CNRC) 대표 삼랭시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차프페아크데이 소장의 조카인 차프소포르 소장이 ○○통상과 지분(현지법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을 나누는 사이라고 말해 911 부대와 ○○통상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28~29쪽 인터뷰 기사 참조). 전 부대원 모니 역시 “고위 사령관들이 ○○통상이 마치 자기 사업체인 양 과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 대사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80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운동가는 12월28~29일 전후 아시아권 국가의 여러 대사관들이 정부와 비공식 미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강한 압력이 가해졌다.

“그 ‘조치’가 어느 수준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그 미팅 이후 정부가 노조에 경고장을 보냈고, 그리고 진압이 있었다. 대사관들의 직간접적 압력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압박은 가해졌을 거라 본다.” 노동운동가의 말이다.

“그 ‘조치’가 어느 수준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그 미팅 이후 정부가 노조에 경고장을 보냈고, 그리고 진압이 있었다. 대사관들의 직간접적 압력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압박은 가해졌을 거라 본다.” 노동운동가의 말이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21>은 한국 대사관이 야당에까지 사실상의 ‘압박’을 가한 사실을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한수 주캄보디아 대사의 명의로 대사관이 삼랭시 대표에게 보낸 서한은 ‘긴급’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한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체불명의 아웃사이더들의 불법 행동”이라 표현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한국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삼랭시 대표는 기자에게 “서한을 받은 직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접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겨레21>은 ○○통상 쪽이 4~5개월 전 당시 ‘민주노조’(캄보디아 대부분의 봉제업체에는 ‘어용노조’가 있다) 간부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몇 달간 ○○통상 내 파업 동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통상은 1월10일 발표한 해명 자료를 통해 “자회사에는 5개의 복수노조가 있으며, 해당 노조들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의 노동자들이 이날 파업에 어떤 규모로 참가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통상은 노조 탄압으로 악명이 높다. 전 노조 간부는 물리적 폭력을 포함해 회사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아마 회유금을 쥐어주고 쫓아낸 것 같다. 그날 이래 그 간부는 프놈펜을 떠났고 나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관련 상황을 잘 아는 한 현지 노동자가 익명을 전제로 한 말이다. ○○통상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국제노동기구(ILO)랑 협조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생산 현장 모니터링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ILO가 운영하는 ‘더 나은 공장 캄보디아’(Better Factories Cambodia)의 운영자인 제이슨 저드는 <한겨레21>과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다. “○○통상도 다른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ILO 모니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걸 캄보디아 봉제업체들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그들의 노동환경이 투명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저드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통상은 자발적 프로그램인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사용자 관계 향상을

위한 ‘자문 서비스’(Advisory Services)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캄보디아 공장 중 5~10%만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권은 캄보디아의 헌법은 물론 노동법,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도 비준한 국제협약(캄보디아는 ILO 노동협약 98호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비준국이다) 등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은 얼음판이다.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 효과까지 노리며 잔인하게 진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을 포함해 캄보디아에 투자자를 배출한 나라 대사관들의 압력까지 가세하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체들이 임금을 인상하면 적자가 날 거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160달러로 임금을 올려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그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적자의 증거를 제공하면 우리도 120달러 혹은 130달러라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아툰 의장은 말한다.

2009년 캄보디아개발연구소(CIDS)가 수행한 ‘캄보디아 봉제산업 노동자들의 현실 임금’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봉제공장 노동자 1명이 창출해내는 월 순이익은 280달러 수준이다. 생산 비용은 물론 ‘뇌물’ 비용까지 제외하고 나오는 순이익이다. 보고서는 이 중 20% 미만이 노동자 몫이고, 80% 이상이 사용자 몫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상도 다른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ILO 모니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캄보디아 봉제업체들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그들의 노동환경을 투명하게 말하는 건 아니다.” 『더 나은 공장 캄보디아』의 운영자 제이슨 저드

“80달러에서 160달러로 임금을 어떻게 100%나 올려주느냐고 하는데, 이건 임금을 곱절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임금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3세계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 NGO ‘솔리대리티 센터’(Solidarity CENTER) 캄보디아 담당 국장인 데이비드 존 웰스의 말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현실 물가와 관계없이 저임금이 고착화된 현실과 저임금을 찾아 떠나는 ‘철새’ 투자자들의 현실을 꼬집고 있다.

다리에 총상을 입어 두 번의 수술을 남겨둔 ○○은 당분간 춤을 출 수도 미싱을 밟을 수도 없다. 그날의 사건 이후 한국 기업 노동자인 ○○의 병실을 방문한 한국인은 취재진 외에는 없다. 간호하는 아내와 어머니 등 3명의 한 끼 식대로 5달러나 지불해야 하는 ○○은 그나마 한국에서 이주노동하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기부금을 모아줬고,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의

삼랭시 대표가 병원비를 보태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일했던 ‘○○’은 “유혈 사태 뒤 1800명의 노동자 중 500명이 남고 다 떠났다”고 공장에서 퇴근하고 있던 노동자 비락(가명)이 귀띔했다.

1월 15일 오후 6시께, 다시 찾은 ○○○○ 공단 서쪽 문을 통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터로 늘어선 노동자들은 잔업 2시간을 마치고 나와 저녁거리를 사는 중이다. 서쪽 문을 통해 공단 부지 안으로 좀더 걸어가면 보초를 선 병사 두어 명과 나른한 군인들이 장기판을 두고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왕실군(RCAF) 70여단이다. 최근 사태 이후 공단 내 주둔하는 70여단은 2008년 1월 창설된 대테러 특수부대다. 역시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다.

시장길로 다시 나와 어수선한 골목길을 오르면 중국 공장 하나가 여전히 조업 중이다. 더 좁은 왼쪽 골목길을 타고 공단 노동자들의 숙소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월 25달러짜리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소코안(37)은 저녁을 짓고 있었다. 잔업을 하지 않아도 130달러 기본급을 받는 그녀는 ‘오션스카이’(Ocean Sky)라는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스페셜 기술자’다. 그러나 소코안 역시 결과적으로 버는 수입은 150달러가 넘지 않았다.

건너편 월 45달러의 깔끔한 숙소에는 2012년 프놈펜으로 이주한 참파(24·가명)가 살고 있다. 6살짜리 아들을 키워주는 엄마에게 매달 25달러를 보내는 참파는 1월5일 수령한 12월치 월급이 깎여나왔다. 잔업수당을 모두 포함해도 88달러. 파업 때문이다. 1월2일 댄싱 데모에 참여했다가, 발포가 있던 3일은 방 안에 꼼짝 않고 있었던 참파는 파업이 다시 벌어지면 참여하겠단다. 참파네 복도에서 3개월 된 동생을 어르고 있는 훗헝리는 들쳐안은 갓난아기가 품에서 오줌을 싸지만 여전히 눈웃음이다.

“엄마가 어젯밤에는 밤 10시에 오셨어요. 오늘도 야근한대요.”

조정대상보도2

- 인터넷 한겨레 - 『“이명박 전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경제 자문’ 그만둬야”』 제하의 기사(2014년 1월 22일자 국제면)
- 내 용 - ‘노동자 유혈 사태’ 캄보디아의 유일 야당 대표 삼랭시 인터뷰

삼랭시(64 · 사진) 캄보디아구국당(CNRP ·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대표는 현재 훈센 총리와 대척할 만한 유일한 야당 정치인이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적 소송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을 떠난 바 있다. 지난해 7월 19일 총선을 열흘 앞두고 귀국했다. 이후 반훈센 정서를 활용해 정치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한겨레21>은 지난 1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자리잡은 캄보디아구국당 본부에서 그를 만나 최근 노동자 유혈 진압 사태 등에 대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991부대 사령관, 약진통상 지분 30% 소유…사업체의 압박이 잔혹한 진압 낳았다”

강경파가 진압 명령

- 지난 1월14일 프놈펜 지방법원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무슨 질문을 받았다.
- = 내게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160달러 안’을 지지하는지 물어서 둘 다 ‘그렇다’고 했다.
- 정정 불안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 사실무근이다.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할 뿐이다.
- 1월2일 약진통상 앞에서 벌어진 폭력 진압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뭐였는가.
- = 군인들이 진압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게다가 공수부대라니.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는 이들 아닌가.
- 충격은 충격이고, 어디 전화라도 걸어 항의라도 했는가.
- = 내무부 장관에게 전화해 진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내무부는 군인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 공수부대 진압을 명령한 이가 누군지 아는가.
- = 강경파다. 군 내부에도 있고, 훈센 총리 자체도 이런 문제에 강경파다. 무엇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진압에 연루된 이들이 있다. (○○통상과 이웃한) ‘911부대’ 사령관 차프페야크데이의 조카이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차프소포른이 ○○통상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기 지분이 있는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고 개입한 거다. ‘근처 한국 회사’(인터뷰 초기 삼랭시는 ‘○○통상’이라고 지목하기보다 ‘근처 한국

회사'라고 표현했다) 역시 시설물 보호 요청을 이유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선 아주 흔한 일이다.

- 이 나라에서 흔하다는 점 외에, '근처 한국 회사'가 차프소포르른 소장이나 차프페아크데이 사령관과 지분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 = 지분을 나누는 사실을 보여줄 문서는 보지 못했으니 '100%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내부 정보원을 통해 알고 있다. 캄보디아에선 지분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나라의 수배자, 야쿠자들까지 캄보디아 여권을 사서 불법 별채사업을 벌이는 범죄집단들의 천국, 그게 바로 캄보디아다.
- 한국 대사관도 논쟁에 휩싸였다.
- = 한국 대사관이 내게 공식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삼랭시는 곧 비서관을 통해 서한 복사본을 준비해 취재진에게 건넸다.) 통탄스러운 점은, 대사관도 그렇고 한국 업체들이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업체를 보호하도록 압박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잔혹한 진압을 낳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압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다. 무책임한 처사다.
- 왜 이렇게 유례없는 강경 진압이 이어졌나.
- = 봄철 아닌가. 바이어로부터 상업적인 주문량이 폭발하는 시기다. 하루라도 주문량을 못 맞추면 큰 손실을 보니 그들의 이익 손실만을 생각한 거다.

“통탄스러운 것은, 대사관도 그렇고 한국 업체들이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업체를 보호하도록 압박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잔혹한 진압을 낳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압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다. 무책임한 처사다.”

- 정치적 변수는 어떤가.
- = 지난해 7월의 부정선거(총선) 이후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는 전례 없는 큰 집회를 조직화했다. 12월부터는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가세하며 어마어마한 피플파워가 형성됐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파업노동자들을 유혈 진압하면서 모든 비판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실수한 거다. 국제사회가 받을 충격은 생각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전 국제사회가 구속 노동자 석방과 독립 조사, 그리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그런데 1월4~6일 이어질 예정이던 반정부 시위는 왜 취소했는가. 노조도 파업을 유보했다.
- = 유혈 진압 명분을 주고 싶지 않아서지. 사실상 비상사태 정국이니 우선 국제사회가 압박할 공간을 열어놓고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집회를 할 계획이다.
- 옆나라 타이 반정부 시위와 정정 불안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 잉락 친나왓 타이 총리의 용감한 대응에 찬사를 보낸다. 잉락 총리가 당선된 지난 총선은 국제사회도 인정한 공정선거였고, 야당도 선거 결과에 월가알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잉락 총리는 충돌을 피하려고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대로 사임하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혼센은 뭐하나?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그야말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 잉락 총리의 친오빠인 탁신 전 총리는 당신의 정적인 혼센 총리와 친분이 깊고, 경제 자문도 했던 인물이다. 이 복잡한 인맥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 = 탁신은 의료복지를 포함해 친빈민 정책을 폈다. 반면 혼센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되레 빈곤층으로부터 토지 수탈을 자행하지 않나.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고, 내게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더 도드라진다.
- 탁신도 그렇고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혼센의 경제 자문이다.
- = 혼센 자문역을 자임하는 누구라도 그 역할을 그만두라는 게 나의 조언이다. 안 그러면 혼센 정부가 자행하는 탄압과 범죄에 공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 베트남 얘기를 해보자. 캄보디아 구국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폭력과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그리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베트남 정서가 고조되고 있고, 당신 역시 집회 연설 등을 통해 ‘유온’(Yuon · 베트남인이나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을 일컫는 칭호로, 경멸적 호칭이라는 지적이 많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자칫 반베트남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설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 = 선정적인 언론의 구태의연한 비판이다. 타이도 베트남계를 유온이라 부르는데 왜 그들은 비판하지 않는가. 베트남이 생기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던 이들이 유온이라 불렸다. 기자들, 사전 학습 좀 해라. 우리가 유온이라 부를 때 누구도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 캄보디아와 타이의 상황은 좀 다르다.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더 복잡한 분쟁 관계 속에 있었고, 반베트남 정서도 자리잡힌 마당에 그런 용어나 레토릭이 야기할 인종주의의 고조, 불필요한 분쟁을 우려하는 것이다.
- =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비판하는 건 중국이나 한국이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인종주의적 접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베트남인’이나 ‘베트남’ 자체에 대해 아무 반감이 없다. 다만 현 베트남 정부의 대캄보디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뇌물을 노동자 임금으로 돌리기만 하면

- 당신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면 어떤 노동정책을 펼 것인가.
- = 우선 ‘법치’를 바로 세워 부패 근절에 전념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그들 사업체 보호를 위해 고위 관료나 군에 바치는 뇌물을 노동자 임금으로 돌리면 임금 인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나라의 부패는 두 종류다. 고위 관료들에 의한 부패와, 말단 공무원들이 생존을 위해 범하는 부패. 후자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일반 공무원의 임금은 100달러 내외). 아울러 나는 캄보디아가 구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훈센은 이 나라를 구걸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 현재의 캄보디아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 = 편협한 투자자들은 독재정부라도 마다 않고 ‘안정’된 환경을 원했다. 그러나 ‘독재하 안정’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 투자자들도 마인드를 전환하기 바란다. 훈센 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며 세운 안정은 몇 주, 몇 달을 못 간다.
- 망명 생활을 여러 번 했다. 시국이 어수선한데 또다시 망명할 수 있는가.
- = 이제 훈센이 망명할 차례다. 힘의 균형 관계가 변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1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 제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2014서울조정64)
2. 피신청인은 한겨레21(<http://h21.hani.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독자들이 제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4서울조정65)
3. 피신청인은 한겨레21(<http://h21.hani.co.kr>)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에 링크된 한겨레캐스트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르포” 동영상에 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 또는 피신청인은 위 동영상 중 신청인, ○○ 캄보디아 또는 ○○(이하 “신청인 측”이라 한다)을 언급하며 (i) 신청인 측과 911 공수부대원들이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 (ii)신청인 측과 캄보디아 군이 지분관계라는 캄보디아 야당 대표의 발언 내용, (iii)캄보디아 공수부대원들이 신청인 측의 경비를 맡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 (iv)신청인 측이 부지 내에 건물을 세워놓고 임대사업을 했다는 내용 등을 삭제 편집하라. (2014서울조정65)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기업의 양탈에 충알이 발사되었다”, “독재정부도 마다 않는 한국 투자자들 변해야”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본지는 지난 2014년 1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한겨레21’지면 기사 996호로 최근 있었던 캄보디아 대규모 유혈 진압사태와 관련된 보도에서 ○○통상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하 “○○ 캄보디아”)과 캄보디아 911부대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911 군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 캄보디아○○ 군에 어떠한 진압요청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위 공장 부지를 군이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캄보디아는 본사인 (주)○○통상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캄보디아 현지 군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캄보디아 유혈 진압사태로 이어진 2014년 1월 2일 정오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으며, ○○ 캄보디아의 다수 근로자들이 위 시위에 가담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 캄보디아는 공장 인근에는 외부 시위대가 캄보디아 군 부대와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귀가 조치를 취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 캄보디아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폭력행사 및 불법해고를 자행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캄보디아는 현지 법령 및 ILO의 권장근로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정신청취지2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겨레(<http://www.hani.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독자들이 제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4서울조정66)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이명박 전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경제 자문’ 그만둬야”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 본지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최근 있었던 캄보디아 대규모 유혈 진압사태와 관련한 보도에서 ○○통상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하 “○○ 캄보디아”)과 캄보디아 911부대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911 군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 캄보디아 군에 어떠한 진압요청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위 공장 부지를 군이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캄보디아는 본사인 (주)○○통상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캄보디아 현지 군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캄보디아 유혈 진압사태로 이어진 2014년 1월 2일 정오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으며, ○○ 캄보디아의 다수 근로자들이 위 시위에 가담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 캄보디아는 공장 인근에는 외부 시위대가 캄보디아 군 부대와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귀가 조치를 취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 ○○ 캄보디아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폭력행사 및 불법해고를 자행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캄보디아는 현지 법령 및 ILO의 권장근로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 캄보디아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 <한겨레21>은 지난 1월 27일 제996호 표지이야기 등 최근 캄보디아 시위대 유혈 진압사태 관련 보도에서 현지 야당 지도자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통상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이하 “○○ 캄보디아”)과 이번 시위 진압에 참여한 캄보디아 911부대가 부지, 지분 등을 공유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 캄보디아는 “911부대와 어떠한 유착관계도 없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군에 어떠한 진압요청도 한 바가 없다. 또한 ○○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군과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지 ○○ 캄보디아의 지분 100%는 ○○통상의 소유로, 캄보디아 군과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 캄보디아는 “자사 소속 근로자들이 유혈 진압사태로 이어진 지난 1월 2일 정오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하거나 다수 근로자들이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장 인근에는 외부 시위대가 군과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귀가 조치를 취하였으며, 자사는 현지 법령 및 ILO의 권장근로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으므로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21’ 2014년 2월 24일자(제999호) 20면에서 40면 사이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글자크기는 통상의 제목 크기로 하고, 본문의 글자는 통상의 기사의 본문글자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목차란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안에 기재하여 게재지면과 함께 표시하여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21’ 홈페이지(<http://h21.hani.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초기화면(<http://www.hani.co.kr>)의 기사목록 중상단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독자들이 제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안에 표시하여 2014년 2월 17일부터 12: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동영상(인터넷 한겨레21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6252.html 기사 중의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르포 [21의 생각])의 말미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동영상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배경화면은 ○○ 캄보디아 현지 사진을 화면으로 하며,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한다. (4항의 이행은 2014년 2월 24일까지 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4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2.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한겨레21 - 『○○ 캄보디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4일자 64면, 인터넷 한겨레21 2월 24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3

신청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81, 2014서울조정82(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이명박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주간한국, 인터넷 한국일보)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01.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수상한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으며,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농협의 전산기록에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 확인과 절차를 거친 후 적법하게 상금을 수령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주간한국 -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13일자 1면 및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1월 11일자 정치면)

- **내 용** - 농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세탁’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은 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상한 상금의 수표가 채 입금도 되기 전 이를 매입해 이 전 대통령 계좌로 송금했다.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전산기록이 돌연 종적을 감췄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은 전산 자료를 10년 동안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다. 결국 대통령을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셈이다. 위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농협 안팎의 공통된 견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5,000만원)를 받았다.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지불해야 할 186억원 중 절반 이상인 100억달러를 국내 수출입은행이 28년간 대출해주는 내용의 이면 계약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상대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대가로 수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이 상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환경 분야 등에 기부하거나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지면에 옮겼다. 국민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돈은 전액 이 전 대통령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면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1년 54억9,659만원에서 2012년 57억9,96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예금 증가분이 컸다. 예금이 1억2,022만원에서 6억5,341만원으로 5억원 이상 급증했다. 예금 급증 원인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수령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개인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상금 역시 이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허둥지둥 해명했다.

당시 ‘상금세탁’을 도운 게 바로 농협이다. <주간한국>이 입수한 내부분견에 따르면 농협 청와대 지점은 2011년 3월23일 외화수표 추심전 매입승인을 요청했다. 매입 품목은 아랍에미리트 은행 ‘Emirates NBD’에서 발행한 50만달러 수표, 매입신청인은 이 전 대통령이었다.

이를 통해 농협 청와대지점은 아직 입금되지도 않은 수표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계좌에 5억원 이상의 현금을 송금했다. 복수의 농협 내부직원들은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농협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농협 내부문건 중 ‘2011년 승인신청 접수 총괄대상’을 보면 2011년 3월23일까지 접수된 외화수표매입건은 이 전 대통령의 50만달러가 유일하다. 공직자는 해외에서 일정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후 해당 전산기록이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시기는 2011년 4월11일 전산사태를 전후해서다. 전산사태 당시에도 여신관리시스템은 정상작동했다. 그러나 돌연 시스템이 먹통이 된 뒤 이 전 대통령의 기록이 삭제됐다.

농협 여신관리부의 한 직원은 “이 전 대통령의 외화수표 추심전 매입 전산기록이 ‘청와대지점 여신관리시스템 장애 복구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 직후 삭제됐다”며 “이 기록만이 유일하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삭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전산 자료를 10년 동안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산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 혹은 정정은 가능하다. 그래도 여전히 기록은 남는다. 기록 자체를 삭제에는 농협 내 IT인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농협 안팎에선 수표 매입과 전산기록 삭제가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다. 특히 농협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고위층 인사의 개입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한 농협 내부 직원은 “청와대의 청탁이 있었는지 농협의 자진 과잉충성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 수표 추심 전 매입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최고위층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말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홍보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의 거래 사실은 개인정보로 분류돼 공개할 수 없지만, 수표 추심 전 매입은 서류만 증빙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떤 고객이라도 전산삭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협 청와대지점은 청와대의 주거래은행이다. 역대 정부 청와대 주거래은행은 ‘금고’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까지 주거래은행을 맡아온 우리은행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검은돈 일부를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 청운동지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국민은행 역시 MB 대선 캠프 외곽지원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관련 업체인 와인프린스에 17억원을 특혜 대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2009년 농협 청와대지점이 청와대 주거래은행 자리를 넘겨받았다. 농협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내곡동 사저 신축 논란 당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6억원을, 이전 대통령이 2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일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선 ‘청와대 주거래은행은 금고’라는 공식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와대 주거래은행은 정권실세들에 편의를 제공해 온 게 사실”이라며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고리”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주간한국 인쇄판 1면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홈페이지 첫 화면과 1월 13일자 인쇄판 1면에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이라는 제목, 14면에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라는 부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가능한 규정이었으며 농협 데이터상의 전산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상금의 수령은 전직대통령 사례와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공직자행동강령 및 소득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의 도움으로 상금을 세탁하고 2011년 4월

전산사태를 전후하여 전산기록 삭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오보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원불상 제보자의 자료와 의견을 인용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농협 측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조정신청취지2

피신청인은 주간한국 온라인 홈페이지(<http://weekly.hankooki.com/>) 초기화면 우측 최상단 위치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만 7일(16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조정대상기사(“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의 기사는 삭제 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이라는 제목과 기사에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라는 부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은 가능한 규정이었으며 농협 데이터상의 전산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상금의 수령은 전직대통령 사례와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공직자행동강령 및 소득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의 도움으로 상금을 세탁하고 2011년 4월 전산사태를 전후하여 전산기록 삭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오보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원불상 제보자의 자료와 의견을 인용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농협 측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간한국>에 [별지]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1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14면에 제목과 본문을 게재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인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주간한국> 홈페이지(<http://weekly.hankooki.com/>) 에 [별지] 기재의 보도문을 게재하고,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2. 25.

<별 지>

1. 제 목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2.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홈페이지 첫 화면과 1월 13일자 인쇄판 1면에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이라는 제목, 14면에 「각하 재산 증식 돕고 전산기록 삭제」라는 부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외환수표 추심 전 매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농협 데이터상의 전산 기록도 남아 있으며, 당시 상금의 수령은 공직자 윤리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 상금세탁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주간한국 - 『「농협, 이명박 전 대통령 ‘상금세탁’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10일자 14면, 인터넷 주간한국 3월 10일자 정치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 사 례 4

의사인 신청인이 페이스북에서 섬노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116·11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조○○

피신청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사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2.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지방대 병원에 근무 중인 현직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섬노예 현상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섬노예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문화상대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비유를 들어 지적한 것인데, 기자가 이를 잘못 이해해 마치 섬노예 현상을 옹호한 것처럼 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신청인의 주장처럼 문화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 설명한 부분을 기자가 오해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자, 피신청인이 알림 형태로 섬노예 옹호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닷컴** - 『‘전라도 섬노예’ 옹호?... 현직 의사 폐북 글에 네티즌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 (2013년 2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 한 지방대 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의사가 이른바 ‘전라도 섬노예’ 사건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글 속엔 해당 의사의 경험담과 그가 생각하는 ‘섬노예’ 현상 해결책 등이 담겨 있는데, 현재 온라인 상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유인해 ‘염전 노예’로 삼은 혐의 영리약취 및 유인 등)로 직업소개소 직원인 고모(70)씨와, 염전 주인 홍모(48)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이 사건은 이른바 ‘전라도 섬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현재까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지방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A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라도 섬노예’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똑똑한 척 하면 재수없냐? 아니면 남자로서 지적매력이 돋나(있어보이나)? 부디 후자이길 빈다. ㅋㅋ”며 말문을 열었다.

한 지방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A씨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페이스북 캡처 A씨는 장문의 글에서 자신이 27살이었던 당시 어느 외딴 섬의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노예”제도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하나의 질서일 뿐이었다”면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개고기’를 먹듯, 그 곳 사람들은 ‘노예’를 부릴 뿐이었다”고 적었다.

또 A씨는 “노예들은 대부분 자유의지가 없다.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세월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없앴다”면서 “조선시대 노비들이 신분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처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섬노예’ 들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노예로 살기를 택했다. 최소한 먹을 것과 잠잘 곳은 제공되지 않던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노예들이 폭력과 구타로 감금당하고 일을 강요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그들은 중요한 생산도구이고, 구하기 어려운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경시대에 소는 재산목록 1호였다. 소중한 소를 때리고 병들게 할 농민은 없었다”며 “섬의 노예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염전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박하게 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그들 사이의 계약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 뿐”이라고 적은 A씨는 “하지만 서로의 동의하에 일어난 계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섬노예’들에 대해 “이들은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해 낼 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렇기에 염전 주인을 포함한 섬 사람들의 인식은, 오히려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나가봐야 굶어죽거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놈'이기에, 그런 인간들을 거둬주고 돌봐주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A씨는 “실제로 이들 중 밖으로 나간 이들은 대부분 그러한 경과를 밟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오히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전라도 섬노예’ 사건 관련 MBC 뉴스 영상 캡처 이 같은 논의를 통해 ‘하나의 폐쇄된 집단은 자신만의 독특한 자생적 질서를 가진다’고 설명한 A씨는, 이어 “염전은 섬의 주요 산업이며, 섬의 경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염전으로 인한 이득은 통상적인 인건비를 넘어서지 못한다. 노예를 싼값으로 부리지 못한다면 염전은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염전은 문을 닫아야 하고, 이는 섬 경제의 초토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섬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으로 ‘사회 전체적인 인권의식의 신장’과 ‘경제적인 발전’을 꼽고는 “이것만이 끊임없는 고리를 끊을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현직 의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렇게 당당한지, 이 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된다”, “섬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정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상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마냥 분노만 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말 같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해당 글을 쓴 A씨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해당 글의 내용은 ‘섬’의 자생적 질서와 그로 인한 현상 등을 소개한 것일 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평소 내 생각을 잘 아는 지인들과 페이스북에서 나누려는 목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쓴 글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과거 ‘섬노예’ 문제와 관련해 SBS에 제보도 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섬노예’ 현상이 지속되는 걸 보고, ‘일회성 보도나 관심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전라도 섬노예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8일자 사회면에 ‘현직 의사가 전라도 섬노예 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니... 네티즌 갑론을박’이라는 제목으로 의사 A씨가 전라도 섬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직 의사 A씨는 전라도 섬노예 제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페이스북의 글을 무단으로 편집하여 A씨가 섬노예 제도 옹호 의사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였습니다. 원글의 맥락은 보도와 정반대로 섬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의도적 왜곡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전라도 섬노예 논란 보도” 관련 알림

나. 내용 : ○○닷컴은 지난 2월 8일자 사회면 “전라도 섬노예 옹호?...네티즌 갑론을박” 제하의 기사에서 ○○대병원에 근무중인 현직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섬노예 현상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섬노예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문화상대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으며, 해당 의사 역시 섬노예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4년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조선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2.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닷컴 - 『“전라도 섬노예 논란 보도”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2월 21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 례 5

신청인이 컴퓨터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수리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4서울조정253 · 254, 2014서울조정255 · 256(병합) 각 조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KBS-1TV, KBS 미디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4. 03. 2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일부 컴퓨터 업체들이 간단한 고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싼 수리비를 청구하고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돌려주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사 사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취재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인인 컴퓨터 기사의 부탁으로 수리를 요청한 컴퓨터를 맡아 보관했을 뿐,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핵심부품 교체없이 비용을 받는 등의 컴퓨터 수리사기와는 무관한데도, 마치 컴퓨터 수리사기 업체인 것처럼 보도되어 심각한 신용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반론을 해당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고, 다시보기(VOD) 화면 중 신청인 관련부분을 삭제 · 편집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컴퓨터 수리 사기』** 제하의 보도 (2014년 3월 7일자 20:00, KBS미디어 3월 7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멀쩡했던 컴퓨터가 수리 후에 더 망가진다?!

컴퓨터 사용 중 갑자기 멈춰버린 컴퓨터 때문에 답답했던 소비자들이 많다.

이때 도움을 요청 하는 곳은 바로 컴퓨터 수리 업체이다. 그런데 일부 컴퓨터 업체에서 간단한 고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얼마 전 컴퓨터 수리를 맡긴 김 모 씨는 70만원에 구입한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93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황당한 상황.

취재결과 교체했다는 부품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원래 부품 그대로였다. 또 다른 제보자 최 씨는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고장 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데이터를 따로 보관 후 부품을 고장 낸 후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며 엄청난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직접 컴퓨터 수리를 맡겨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7곳의 수리업체 중 무려 6곳에서 간단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을 요구했다. 한 컴퓨터 수리 업체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는 업계에선 마치 관행처럼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컴퓨터 수리 업체 측은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컴퓨터 수리 업체들! 그들이 순진한 소비자를 기망하는 교묘한 수법을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중략)

전문가가 검증한 정상적인 컴퓨터라고 밝힌 후.

- ▷ 나레이션 : 제작진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에 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해당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연결된 선을 뽑아 컴퓨터 켜더라도 운영체제가 작동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 나레이션 : 컴퓨터 수리기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고장입니다. 수리 기사가 컴퓨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는 멀쩡한 부품이 고장 났다고 말합니다.
- ▷ 수리기사 : 이거는 그래픽카드나 보드 자체가 죽은 거예요.
- ▷ 제작진 : 죽었다고요?

- ▷ 수리기사 : 그래픽카드 아니면 메인보드라는 기관 자체가 죽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컴퓨터) 짚어봐야 되요.
- ▷ 제작진 : 회사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 수리기사 : 해봐야 되는데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와요.
- ▷ 나레이션 : 수리 업체가 컴퓨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져간지 3일후 수리가 완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수리 업체 관계자 : “아~ 이거 돈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 제작진 : 네네네~
- ▷ 수리 업체 관계자 : 150,000원 이라던데?
- ▷ 제작진 : 154,000원이요?
- ▷ 수리 업체 관계자 :네
- ▷ 수리 업체 관계자 : (전화 통화) 뭐 수리한거야 이거? 메인보드? 아~ 알았어~
- ▷ 나레이션 : 멀쩡한 메인보드를 수리했다는 수리기사 과연 교체가 된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 ▷ 제작진 : 메인보드 교체한거라고요?
- ▷ 수리 업체 관계자 : 네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 ▷ 나레이션 : 하지만 교체했다는 부품은 컴퓨터를 맡기기 전에 미리 촬영해둔 부품과 같았습니다.
- ▷ 제작진 : 이거 메인보드 교체한거 아닌데? 원래 저희 쓰던 메인보드 똑같은 건데?
- ▷ 나레이션 : 항의하자 수리기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 ▷ 제작진 : (컴퓨터 수리기사와 통화 내용) 이 메인보드 저희가 원래 쓰던 거든요?
- ▷ 수리기사 : (제작진과 전화통화) 그러니까 고객님의 그안에 수리팀에서 문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고객님의

- ▷ 제작진 : 메인보드 교체라고 하셨는데 메인보드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확실하거든요?
- ▷ 수리기사 : 확실하세요? 그럼 가져가 주시고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 ▷ 나레이션 : 수리 기사는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약 15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업체가 방영되었던 부분의 영상파일을 보여주며 보도한다.
2. 피신청인은 KBS미디어(<http://www.kbs.co.kr>)의 홈페이지 소비자리포트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KBS1 소비자리포트 컴퓨터 수리 사기”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합니다.
2. **본문** : 본 방송이 지난 3월 7일 KBS1-TV 〈소비자리포트〉프로그램에서 “컴퓨터수리 사기”란 주제로 방영된 내용 중 ‘컴퓨터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체했다고 발뺌을 한다’는 내용으로 업체와 업체 관계자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 하였으나, 해당 업체와 관계자는 〈소비자리포트〉에서 컴퓨터 수리 사기란 주제와 내용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수리를 부탁한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해 주었던 것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을 정정합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방송 관련 알림

나. 본문 :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제하의 보도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채 고가의 수리비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례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컴퓨터 수리업체인 '○○○'는 방송된 '컴퓨터 수리 사기'와 무관한 업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4년 4월 25일(금)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KBS-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반론보도문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2014년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제하의 보도)의 다시보기(VOD) 화면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편집하여 게재한다. 또한, 제1항의 보도문의 다시보기(VOD) 화면은 4월 25일(금)까지 기간 중 24시간동안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2항, 제3항의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위 제2항,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0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 미디어 - 『3월 7일자 <컴퓨터 수리 사기> 방송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4년 5월 2일자 홈페이지 똑똑한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게시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❶ 사 례 6

중소기업청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판한 익명의 중소기업 색출에 혈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343 정정청구
신 청 인	중소기업청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손톱밀 가시’ 제도가 개선효과는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익명으로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기사화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 해당 중소기업을 묻는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언론에 ‘손톱 밀 가시’ 제도를 비판한 익명의 중소기업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때 관련 조합 이사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전화였으며, 해당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점검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본 것일 뿐, 제보자를 색출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칼럼과 관련해 중재부는 다소 과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담당자가 유관 기관에 전화한 사유에 한정하여 반론보도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서울경제 -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 제하의 기사 (2014년 3월 26일자 2면)
- 내 용 - “기사에 나간 A업체가 어디입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자신들을 두고 쓴소리를 한 ‘중소기업 찾기’에 혈안이다. 중소기업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손톱 밑 가시’가 방치된 지 1년. 이것들이 목구멍의 가시가 될 만큼 커져 중소기업계를 괴롭히고 있지만, 중기청의 대응은 미흡했다. 지난주 본지는 ‘중기에 목엿가시된 손톱 밑 가시’ 기사에서 개선되지 않는 규제완화 건의사항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 인력난부터 비용부담, 관세까지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사안들이었다. 불만을 토로한 업체들은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해줘야 할 곳들이다. ← [관련기사 3월18일자 1·3면](#)

하지만 담당부처인 중기청은 익명처리에 가려진 업체들을 서툴게 찾아 나섰다. 선한 의도일지라도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위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빨리 사안을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중앙회마저 중기청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어 버렸다. 취재 도중 “괜히 건의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던 한 중소기업 대표의 우려는 현실이 돼버렸다. 업계에선 “당연히 중소기업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중기청이 예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애로사항을 마음 편히 털어 놓겠냐”고 푸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최대 피해자는 공무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규제타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신들이 동네북이 됐다는 것. 그러나 중기청의 유치한 대응을 보고 있으면 정작 이들이 감히 억울한 피해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수면 위로 떠오른 대다수의 규제는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나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간단히 풀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사안들도 결국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 “제대로 일 안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

조정신청취지

서울경제신문은 서울경제 A02 종합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6일자 A02 종합면에 ‘규제는 놔둔채 입 틀어막는 중기청’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청이 자신들을 두고 쓴소리를 한 익명 처리된 중소기업을 범죄자를 발본색원하듯 찾기에 혈안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본 신문 3월 18일자에서 보도한 규제는 중소기업청 소관 규제가 아닌 관계로 중소기업청이 규제문제를 제기한 기업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입막음을 할 이유도 없고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발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및 관련조합 담당자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익명의 기업인을 찾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이미 2013년 2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등에 송부한 자료에 규제내용, 건의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기청 입장에서는 익명의 업체를 발본색원하듯 찾는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이 자신들을 두고 쓴소리를 한 익명의 중소기업을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마치 범죄자를 발본색원하듯 찾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중소기업청 관련 알림

나. 내용 : 본지는 지난 3월 26일자 A02면 “규제는 놔둔채 입틀어막는 중기청” 제하 기자의눈 칼럼에서 “중기청은 마치 범죄자를 발본색원하듯 익명 처리된 업체를 찾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때 관계조합 이사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였을 뿐, 제보자를 색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4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성장기업면 중하단에 보도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활자의 중간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4.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서울경제 - 『중소기업청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25일자 15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 례 7

전 ○○○○○파크 센터장인 신청인으로 인해 소속 직원 20여명이 사직했으며, 신청인이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요구하고 출장 보고서를 직원에게 작성케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4제주조정9·1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석○○
피신청인 유한회사 제주의소리
중 재 부 제주중재부
접 수 일 2014. 04. 0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모 기관의 간부에 대해 소속 직원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하고, 2~3차례 출장을 가면서 출장보고서는 직원이 쓰도록 하는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감사위원회가 관련 여직원의 경위서 등을 기초로 사실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관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조사된 바 없는데도, 도의원의 추측성 질의내용만을 믿고 정확한 확인 없이 보도하여 기관의 명예 및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해 여직원 술시중 및 출장보고서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하고 허위사실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제주의소리 - 『젓은 욕설, 술시중..., 제주〇〇 간부 누구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27일자 뉴스면)

- 내 용 - 〇〇〇〇파크 간부 직원의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은 ‘일탈’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하면 근무지 무단이탈에, 1년 중 근무일수의 30~40%를 국내·외 출장과 연가 등으로 쓰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항공료와 식비 등의 여비까지 부정하게 챙기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다.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비위’ 행위를 적발해 〇〇〇〇파크에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〇〇〇〇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2012년 5월1~2013년 9월 13일까지 추진업무 전반)한 결과,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22건을 적발해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250만 8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S씨의 비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S씨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팀 소속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 술시중을 시키는가 하면 일주일에 2~3차례 출장을 가면서 출장보고서는 부하 직원에게 쓰도록 해 물의를 빚은 의혹이 제기됐던 당사자다.

심지어 S씨가 부임한 후 1년 6개월 만에 팀 소속 직원 20여명이 줄줄이 사직을 한 사실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 S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지만 당일 출장일 때 전날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항공편을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출장기간 중 출장목적지를 벗어나기도 했다.

또 출장 목적지를 육지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로 맞춰 여름휴가를 지내는가 하면 출장에 따른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굳이 자신이 참가하지 않아도 될 단순 행사에도 9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 120여만원의 여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S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용역업체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용역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특혜를 업체에 제공했다.

연구논문 및 특허출원과 관련해 소위 ‘장난’치기도 했다. 주 연구자의 이름을 논문 저자에서 빼버리는가 하면 오히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 올리기도 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감사위원회는 S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S씨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파크에도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파크는 처분요구가 있는 후 한달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중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 정직 등 3가지 종류 밖에 없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제주○○ 모센터장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무근’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경제면에 지난 2014년 1월 27일자 “잡은 욕설, 술시중 ..., 제주○○ 간부 누구야?”라는 제목, 2014년 2월 17일자 “욕설에 술시중, 제주○○ 간부 사직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파크 모 센터장으로 인해 소속직원 20여명이 사직하였고, 해당 센터장은 소속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 시중을 시키고,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시켜서 소설로 쓰게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위 내용이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직한 직원들은 계약만료 및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고, 해당 당사자는 여직원 술자리 동석 지시 및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시켜서 소설로 쓰게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주소리(<http://www.jejusori.net>)의 초기화면 및 '경제' 면의 초기화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72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며, 조정대상기사 2건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을 지체한 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확정 전 이행도 가능)에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유

중재부는 신청인의 청구취지, 신청인의 주장 및 소명자료의 수준, 피신청인 매체의 성격과 영향력,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를 보도하게 된 경위,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그리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조정심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2014. 05. 09.

<별 지>

가. 제목 : 제주○○ 간부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1월 27일자 『찾은 욕설, 술시중... 제주○○ 간부 누구야?』 제목의 기사 및 2014년 2월 17일자 『‘욕설에 술시중’ 제주○○ 간부 사직서 제출』제목의 기사에서 “○○○○○○파크 모 센터장이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 술시중을 시키고, 출장보고서를 부하 직원에게 쓰도록 한 의혹이 있으며, 부임후 소속직원 20여명이 사직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직원 술자리 동석 지시 및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대리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한 직원들 대부분은 계약만료 및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하였고, 해당 간부가 욕설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제주의소리 - 『제주○○ 간부 ‘여직원 술자리 동석’ 등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4년 5월 23일자 뉴스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 사례 8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폭력 사건을 방치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958 · 959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협업마을 ○○○○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7. 0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집단이 사이비 종교집단이며, 신청인 집단의 대표는 사이비 교주로 염전 소유, 부동산 소유 및 교주가 아닌 경영자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 과거 구속될 당시 언론에 드러난 행태가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 및 유병언과 닮아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당시 신청인 집단 대표의 살인혐의 부분은 법원이 신빙성 있는 증언을 인정해주지 않아 무죄가 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여 소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와 교주로 소개된 신청인 단체의 대표는 법원 판결을 통해 신청인 단체는 종교단체가 아닌 협업마을임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신청인 단체의 대표는 교주가 아니며, 살인혐의 부분도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무죄판결난 것인데도,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 듯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 및 유병언의 행태와 비교함으로써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당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정정보도 및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단체는 구원파 및 유병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제작 · 광고 · 방송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 A - 직언직설 프로그램 『○○동산』 제하의 보도 (2014년 6월 17일자)

■ 내 용

▷ 앵커 : 유병언씨의 도피 핵심인 신엄마 구속에도 불구하고 유씨 체포에 대한 희망은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치밀한 도주계획에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과거 속으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1996년 그리고 잠시 뒤에 IMF가 있었죠 그 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동산 사건인데요. 이 사건 수사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 ○○동산 사건을 직접 수사한 채정석 변호사, 그리고 최○○ 이단연구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재구성 해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바뀌었네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건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동아일보에 날 정도로 그렇게 큰일이었는데 ○○동산 사건이 처음엔 어떻게 들어 온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 채○○ : 그니까 12월 초 11월 말 쯤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요.

▷ 앵커 : 여기는 지금 12월 12일인데 이거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거고.

▷ 채○○ : 이미 수사가 12월 8일날 저희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 앵커 : 압수수색을 했다 진정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채○○ : 네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 앵커 : 무슨 내용이었나요?

▷ 채○○ : 그니까 그 과거에 ○○동산 내에 신도로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당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금 체포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사망 의혹이 있고 또 자기들이 직접 목격해서 맞아 죽은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 앵커 : 이걸 그 당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6년 12월 1일에 무참히 2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건 그동안 이 종교 단체에서 폭행 행위가 있었다라는 신고 때문에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중략〉

- ▷ 앵커 :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앗 이럴수가’ 유병언 일가와 ○○동산 사건의 님은꼴만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죄로 판명이 났죠.
- ▷ 채○○ : 네 그런데 그게 살인사건이 무죄입니다.
- ▷ 앵커 :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 ▷ 채○○ : 실제로 저희가 기소한 것은 죄명이 10가지 정도 됐어요.
- ▷ 앵커 : 사기도 있고.
- ▷ 채○○ : 사기, 횡령, 배임, 그 다음에 조세포탈 그 밖에 이제 뭐 심지어 폐기물 관리법 위반까지 기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안에 들어갔더니 법을 전혀 지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인건비도 안주고 그 외에 또 조세포탈 하기 위해서 모든 전표를 당에 매장해버리고 또 무슨 안에 들어가 봤더니 변호판이 없는 차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게 다 절취한 겁니다.
- ▷ 앵커 : 그게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가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신안에 염전이 있다 유병언 일가가 신안에 염전이 있는 건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 ○○동산도 신안에 염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 채○○ : 염전이 있었습니다 염전이 있고 경남 산청에 또 대규모 땅을 매입했고 강원 홍천에 또 대규모 땅을 매입했고.
- ▷ 앵커 : 강원도에도 땅이 있고 산청에도.
- ▷ 채○○ : 경남 산청에도.
- ▷ 앵커 : 경남 산청에도 전라도 쪽에도.
- ▷ 채○○ : 신안에 염전과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 앵커 : 간척지도 갖고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 ▷ 채○○ : 네 맞습니다.

- ▷ 앵커 :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 ▷ 최○○ : 뭐 우연히 신안에 염전이 갈아졌겠지 신안을 특별히 한 건 아니고 이단들이 가지는 돈이 목적이니까 이단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때만 해도 더욱이나 지금도 그렇겠지만 부동산처럼 좋은 돈을 버는 데가 없으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래서 일치된 우연이겠죠.

<중략>

- ▷ 앵커 : 어유 그래서요 두 번째는 작은 왕국입니다. 여기는 ○○동산 그러니까 이 김○○씨가 ○○야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름 다 빼고 다 ○○야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이 ○○야는 ○○동산에 살고 유병언 회장 일가는 금수원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 채○○ : ○○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는 순수한 영혼이고 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 앵커 : 죄가 없어요.

▷ 채○○ : 그래서 ○○는 죄를 저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뭐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 동산에 이천에 대월면에 있는 그 땅들은 ○○○라고도 하죠 신의 나라입니다 그제.

<중략>

▷ 앵커 : 세 번째는 이 얘기 제가 궁금했었는데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주가 아니라 경영자다 이걸 무슨 얘기입니까 변호사님?

▷ 채○○ : 결국은 이제 사이버종교집단이 됐을 경우에 그 신도들 소위 탈출한 신도들 탈퇴한 신도들에 대해서 재산문제나 그 분들을 속였다는 사기 이런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협업 마을이고.

▷ 앵커 : 종교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같이 협업마을이다.

▷ 채○○ : 같이 식구처럼 경영하는 협업마을이다.

▷ 앵커 : 공동체다.

▷ 채○○ :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분들이

동일한 신앙, 또 동일한 종교행사를 하거든요 하면서 이걸 자꾸 법정에서 부인을 합니다.

- ▷ 앵커 : 아 그럼 이걸 무슨 말입니까? 끝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처벌을 적게 받거나 무죄가 난 거 아닌가요?
- ▷ 최○○ : 저같은 사람에게는 기가 차다고 표현을 해도 표현이 부족한데 저같은 사람에게는 기가 차죠. 왜냐하면 동일한 성경에 근거하고 동일한 예배행위와 모든 또 제가 법조문을 그때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는데 그러나 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예배드리고 하는 행위를 다 인정해놓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종교학자의 기준도 없이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판결을 보고 이것이 그냥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도 악한 짓이지만 만일 다른 힘의 작용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은 저같은 사람이 볼 때 기가 차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 ▷ 앵커 : 예 뭐 이단연구를 하시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근데 제가 궁금한데 왜 교주가 아니고 경영자면 처벌을 적게 받으니까?

<중략>

- ▷ 앵커 : 자 5번은 엄청난 부동산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내역을 보니까 아까 염전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산에서.
- ▷ 채○○ : 지금 제가 그때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수사 결과를 보니까 차명계좌가 183명에 562 계좌가 그 때 발견됐었고요 그 다음에 67명 명의에 총 676건의 부동산이 그 때 발견됐습니다.
- ▷ 앵커 : 그리고 뭐 인감을 교주가 가지고 있어서 차명으로 빌려준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면서요.
- ▷ 채○○ :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재밌는 것은 보니까 17세 소녀의 이름으로.
- ▷ 앵커 : 17살 짜리.
- ▷ 채○○ : 21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무력자인 70대 할머니 명의로 51건 명의를 가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만 그 사람 이름이지 전혀 권리 행사도 못하고 또 차명 명의를 가진 사람이 그걸 부동산을 탈취하거나 할 수도 없게.

▷ 앵커 : 아예 장치를 다 해놨군요.

▷ 채○○ : 핵심세력이나 아니면 그런 무력자들 이름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략>

▷ 앵커 :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채○○ : 그러니까 저 사건이 1심 재판을 하는 도중에 이 조세포탈을 저희가 기소를 했으니까 이 조세 범죄는 다들게 많습니다. 그걸 다투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재판이라는 건 14개월이라는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가서 재판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3년 뒤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그때 이제 교주에 대한 실형 4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 앵커 : 여기 김○○씨는 실형 4년인데 내용은 뭘니까?

▷ 채○○ : 그때 보면 지금 말씀 한대로 횡령, 배임, 조세포탈.

▷ 앵커 : 그 부분만.

▷ 채○○ : 그 다음에 다른 폭력행위라던가 몇 가지 쪽 있습니다.

▷ 앵커 : 그걸 인정받아서 4년형을 살았고.

▷ 채○○ : 중요한 건 살인사건은 무죄가 났는데 그 무죄가 난 것도 저희가 두 가지를 기소했는데 하나는 최○○라고 어린 만 5세 아이를 죽였습니다.

▷ 앵커 : 암매장 됐죠.

▷ 채○○ : 암매장 된 게 아니라 개는 이제 화장을 시켰어요. 화장을 시켰는데 때려서 죽였죠. 때려서 죽였는데 때려서 죽인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 앵커 : 때려서 죽인 것은 인정이 됐는데.

▷ 채○○ :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해치사가 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인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사건이 8년인가 9년 됐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죄를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무죄를 선고했고, ○○○이라고 교주의 장남하고 이제 불륜관계에 있고 그 여자 처녀의 경우는 때려서 죽였는데 시체를 암매장 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시체를 못 찾았고 또 시체를 묻었다고 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진술을 막 반복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시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 ▷ 앵커 :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재판주의니까 증거를 다 못 대면 무죄가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유병언 수사를 보면서 짧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 ▷ 채○○ : 하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와 증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재판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산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때린 것을 본 목격자들, 사체를 묻었던 이런 목격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증언을 법원에서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 ▷ 앵커 : 증언을 인정해주지 100% 인정해주지 않는다.
- ▷ 채○○ : 그러니까 뭐 일부 못 믿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가 선고됐고 사실은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 증인들도 허위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증언의 가치를 법원에서 좀 더 강력히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팀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도 구원파 사건도 그런데 언론과 국민의 여론의 지지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버텨주시면 아마 유병언도 검거하고 상당히 좋은 수사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교훈을 찾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형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7. 30.까지 각 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채널A <직언직설>] 프로그램(재방송 포함)에서 화면 상단에는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란 기재의 내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조정대상보도의 첫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아래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별지1> 목록 기재의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 방송, 홈페이지 게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동산과 김○○ 회장'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4. 6. 17. 『직언직설』 제325회에서 《그때 그 사건 '○○동산'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동산은 사이비 종교집단이며 김○○는 사이비 교주인데 김○○가 신도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원파'와 '○○동산'은 여러 모로 닮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산은 순수한 생활공동체로서 출발하였고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의 신자들이었던 관계로 기독교 신앙적인 요소가 잔존하는 듯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는 퇴색하였고, 전통적인 종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배, 미사, 예불, 참선 등의 종교의식이나 외부인들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산은,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가로막는 어떠한 인적, 물적 장치도 없었고 탈퇴한 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한 일도 없었으며 김○○를 비롯한 소위 지도부가 호화롭다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어서 폐쇄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며 따라서 김○○를 교주로 한 사이비종교집단이라거나 김○○ 개인의 신성왕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산은 구성원들에게 재산헌납이나 외부인을 상대로 한 물품강매, 사기행각 등을 강요하지도 아니하였고, 종말론적인 사이비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살이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통한 구원만 강조하는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회장이 ○○동산의 구성원인 최모 군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강모 양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 양이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비종교집단이 아닌 협업마을 ○○동산과 그 지도자인 김○○ 회장을 ‘구원파’ 및 유병언과 비교 보도하여 협업마을 ○○동산과 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본 방송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별지1 목록〉

1. ○○동산은 협업마을이 아닌 사이비 종교집단이고, 김○○은 그 교주라는 내용.
2. 김○○이 그 교주로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하였으며,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영과 육이 혼합하여 죽음없이 영생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3. 김○○이 ○○동산 구성원들에 대해 중노동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
4. 김○○이 최○○와 (또는) 강○○에게 폭행을 하여 그들을 죽이고 (또는) 강○○을 ○○동산에 매장하는 등 살인 및 사체유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5. 김○○이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살인혐의를 벗기 위해 당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
6. 위 각 내용을 추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본방송)

- 2014년 6월 17일 방송된 [직언직설]프로그램 <그때 그 사건 ‘○○동산’ 미스터리> 내용 중 ○○동산이 구원파와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A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7월 24일까지 채널A의 <직언직설> 프로그램 중간에 2회에 걸쳐 스크롤 자막으로 표시하되,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보여지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합의사항 이행과 함께 <직언직설> 홈페이지에 <별지 1>의 보도문을 제2항의 이행 직후 7일간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은 <별지2> 목록 기재의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 방송, 홈페이지 게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별지1 채널A 홈페이지 게시용 알림문>

가. 제목 : ‘○○동산과 김○○ 회장’에 대한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4. 6. 17. 『직언직설』제325회에서 《그때 그 사건 ‘○○동산’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동산은 사이비 종교집단이며 김○○는 사이비 교주인데 김○○가 신도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원파’와 ‘○○동산’은 여러모로 닮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산은 순수한 생활공동체로서 출발하였고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의 신자들이었던 관계로 기독교 신앙적인 요소가 잔존하는 듯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는 퇴색하였고, 전통적인 종교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배, 미사, 예불, 참선 등의 종교의식이나 외부인들을 상대로 한 포교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산은,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가로막는 어떠한 인적, 물적 장치도 없었고 탈퇴한 자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한 일도 없었으며 김○○를 비롯한 소위 지도부가 호화롭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어서 폐쇄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며 따라서 김○○를 교주로 한

사이비종교집단 이라거나 김○○ 개인의 신성왕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산은 구성원들에게 재산헌납이나 외부인을 상대로 한 물품강매, 사기행각 등을 강요하지도 아니하였고, 종말론적인 사이비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살이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통한 구원만 강조하는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회장이 ○○동산의 구성원인 최 모 군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강 모 양을 살인했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 양이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비종교집단이 아닌 협업마을 ○○동산과 그 지도자인 김○○ 회장을 ‘구원파’ 및 유병언과 비교 보도하여 협업마을 ○○동산과 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본 방송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목록〉

1. ○○동산은 협업마을이 아닌 사이비 종교집단이고, 김○○는 그 교주라는 내용.
2. 김○○가 그 교주로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하였으며,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영과 육이 혼합하여 죽음이 없이 영생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3. 김○○가 ○○동산 구성원들에 대해 중노동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
4. 김○○가 최○○와 (또는) 강○○에게 폭행을 하여 그들을 죽이고 (또는) 강○○을 ○○동산에 매장하는 등 살인 및 사체유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5. 김○○가 살인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살인혐의를 벗기 위해 당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수사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
6. 위 각 내용을 추지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끝.

2014. 07.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채널 A - 직인직설 프로그램 『‘○○동산과 김○○ 회장’에 대한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18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 례 9

모 여대 총장인 신청인이 교원 임용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인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관계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976·977, 2014서울조정978·979(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여자대학교 외 4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iMBC)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4. 07.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대학교 총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친인척을 특별채용하는 등 인사비리가 있으며, 이사회에서 긴급 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자 관계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읍소하면서도 비리의혹을 학내문제화한 학생들을 상대로는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이사회 관계자들에게 무릎 꿇고 읍소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권 행사 및 캠퍼스 설계변경, 물품구매 등은 모두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학생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익명의 투서에 의존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실추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대학들 안녕하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3년 6월 10일자 23:15, iMBC 6월 10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 해설 : 5월 28일, 서울 S여대 앞 공동대책위원회 학생들의 기자회견

6월 6일 수원의 모 대학 앞 파면된 교수의 복직 서명운동

6월 9일 대구 시내에서 벌어진 모 대학 학생들의 가두집회.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겨누는 활시위의 끝에는 자신들이 다니는 ‘대학’ 이 있었다. 과연 학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재단의 비리는 덮어버리고, 학생과의 소통은 거부하는 사립대학의 실태를 PD수첩이 취재했다.

학생을 고발한 학교. 작년, 서울S여대의 교직원과 학생들 앞으로 수신인을 알 수 없는 한 통의 탄원서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해당 대학의 비리가 날낫이 적혀 있었다. 친인척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비리와 기념품 수의계약, 부당한 입시수당 수령등 총 35가지의 항목은 해당 대학교의 총장을 향해 있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긴급히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학생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다.

▷ S여자대학교 학생 : 비리 문제가 사실 등록금을 가지고 그런 거 한 거 짝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내가 고생하고 부모님이 고생하고 빚까지 내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돈으로 그런 걸 하나...

▷ 해설 : 그런데 지난 4월 진실규명운동에 앞장섰던 학생 6명은 경찰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한 건, 놀랍게도 학생들의 학교였다.

▷ S여자대학교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불이익 받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눈감고 귀 막고 입 닥치고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대학이란 말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략>

▷ 해설 : 제작진은 한 사립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 관계자 : 2013년 1월 7일 ○○님은 총장실로 가시다 총장실에서 전화가 와서 ○○○과 나도 내려가다 총장이 울며 무릎 꿇고 빌다. 4월 남편 진급까지 기다려 주면 그 후 나가겠다고 한다.

- ▷ 해설 : 서울S여대의 심 총장 의류학과 교수에서 총무이사 법인 이사장을 거쳐 2007년 총장으로 부임한 그녀는 이 학교 최초의 연임총장이기도 합니다.
- ▷ 심 총장 : 물론 우수한 사람이 우리학교 들어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4년 동안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 ▷ 해설 : 어머니 리더십을 내세우되 파격적인 행보의 젊은 교육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 그런데 늘 당당했던 총장이 학교 관계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겁니다.
- ▷ 해설 : 지금은 곤란하고 남편이 진급한 후에 학교를 나가겠다고 읍소했다는 거 도대체 총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 전성관 피디 : 한 대학의 총장이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한건의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 ▷ PD : 문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가족 일동 앞으로 도착한 익명의 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립대 비리 전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 ▷ 해설 : 20여장에 달하는 투서는 총장을 향한 탄원이었습니다. 교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 부당한 교비 사용, 횡령, 배임 등의 35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투서는 S여대의 전 현직 관계자들에게 배달되 왔다고 합니다.
- ▷ S여대 현 교직원 : 그걸 딱 보는 순간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누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준 듯한 느낌. 제가 아는 부분이나 소문, 아는 범주 내에서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대부분이 사실이구나....〈중략〉
- ▷ 해설 : 거짓 투서라고 일축했다는 심총장. 그러나 진상조사가 거론되자 총장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 ▷ 관계자 비망록 : 2012년 11월 8일 총장이 ○○실로 찾아와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울며 읍소. ○○○님은 그렇게 잘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하셨다고. 사퇴는 할 수 없고, 4월 남편 진급까지 기다려 주면 그 후 나가겠다고 한다.
- ▷ 해설 : 학교 관계자 앞에서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정작 조사에는 불성실했다고 합니다. 〈중략〉

- ▷ 해설 : 어렵게 완성된 조사보고서 대형로펌과 회계사가 투입된 이 조사에서 총장의 비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총장이 부임하고 4년 동안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 그 중 일부는 채용비리가 확인된다는 결과입니다.
- ▷ 강○○ 교수 (S여대 교수, 당시 조사위원)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특채)76건. 이견 대단한거죠.
(PD수첩 측 : 전체 교원이 몇분정도 계시나요?) 지금 한 3백명이 좀 못되죠. (PD수첩 측 : 거의 4분의 1정도를) 전임교원만 그렇습니다. 비전임까지 하면 (특채) 105명이예요.
- ▷ 해설 :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다수는 심총장과 남편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지인관계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육군 장성인 심총장의 남편 S여대 윤 모 교수는 총장의 남편과 육사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총장은 학교의 학군단 운영에 관련한 교수를 뽑기 위해 특별 채용 후보로 윤교수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방학을 앞둔 이례적인 날짜에 굳이 특별채용을 고집한 임용과정. 조사보고는 총장의 개인적 의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PD 수첩”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imbc홈페이지(<http://www.imbc.com/>)의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

가. 제목 : ‘○○여자대학교, 총장 비리 의혹 및 학생탄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0일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여자대학교 총장 심○○이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입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교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즉흥적으로 제2캠퍼스 설계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기교수의 강의를 임의로 박탈하고 예산집행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독단적인 교무행정을 일삼았으며, 납품업체 계약 관련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경 익명의 투서 이후 학교 관계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으면서도, 소위 ‘전문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은 거부하였으며, 게시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하였고, ‘○○ 평화나비’에 대하여 동아리의 승인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익명의 투서 이후 심○○ 총장이 학교 관계자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무릎을 꿇고 빈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원을 임용하였고,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수당만을 지급받았으며, 소관 위원회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제2캠퍼스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표○○ 교수는 심○○ 총장이 의도적으로 강의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단지 2014. 3. 1. 신규 임용예정인 ○○○○ 전공 교수의 발령이 이사회의 파행으로 지연되자, 일시적으로 해당 학과 전임교원으로 하여금 그 수업을 담당하도록 한 결과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은 위임전결 규정상 각 담당자의 단계별 결재를 거쳐 집행되므로 독단적인 교무행정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여자대학교는 납품업체와 시가보다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어 서류를 조작할 필요나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한 적도 없고, ‘○○ 평화나비’에 대하여 동아리 승인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상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심 총장이 ‘전문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일부 거부하였던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이사회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고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임을 밝혀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의 보도문을 MBC-TV <PD수첩> 프로그램의 말미에 방송하되, [별지]의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아이엠비씨 ‘PD수첩’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첫 화면 우측 ‘제보 및 공지사항’란에 [별지] 기재 보도문 제목을 게시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2014. 08. 19.

〈별 지〉

가. 제목 : ‘○○여대 총장 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0일 <대학들 안녕하십니까?> 제하의 보도에서 ○○여대 총장이 비리 의혹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받은 후 학교 관계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재연장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대 측은 “총장이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무릎을 꿇고 빈 사실이 없고, 인사권 행사, 제2캠퍼스 설계변경, 물품구매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학생 게시물에 대해 사전검열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MBC-TV - PD수첩 『‘○○여대 총장 비리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6일자, iMBC 9월 1일자 홈페이지)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 사 례 10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전북조정24·25, 2014전북조정27·28(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1. 송○○ 외 25인, 2. 김○○ 외 40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중 재 부	전북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21. (2014전북조정24·25) 2014. 08. 25. (2014전북조정27·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전주 모 택시회사 전 업주가 가지고 있던 일계표(금전출납부)를 인용 보도하면서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으며, 유착 배경에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사고를 났을 경우 책임비율에서 경찰관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A경찰서 및 B경찰서 교통조사 및 관리 부서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은 택시회사 업주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차량사고 시 특정 회사 소속 택시의 책임비율을 줄여주는 등의 사실은 없었고, 전북경찰청 감사 결과에서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보도로 교통계 경찰관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정보도 및 도합 13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성 후속보도 게재 및 포털 등의 기사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노컷뉴스 -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0일자 사회면)

- 내 용 - 개인택시 취득을 미끼로 택시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의 이면에 경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업주의 금품갈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의 한 택시회사의 기사 A씨는 전 대표 B씨가 경찰관, 택시공제조합 직원들과 모임을 가져왔으며, 수시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몰고 와 사무실에 들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 C씨는 “경찰관들이 야우회를 가거나 모임을 할 때 수시로 다녀갔으며 그때마다 대표 B씨가 ‘한 50만원 챙겨야겠네’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검 사 비			60,000
조 합 비 (복 지 비)			644,000
잡 비	50,000	○○ 직원	500,000
퇴 직 금 (보 험)			-
이 자			290,000
협 의 회			

(사진 1)

특히 전북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금전출납부인 ‘일계표’에는 2013년 8월 26일자로 ‘○○직원 500,000원’이 잡비 명목으로 잡혀있었고, (사진 1)

2013년 5월 31일자에도 ‘○○ 100,000원’이 잡비 항목에 적혀 있었다.(사진 2)

이와 관련해 이 회사 기사들은 “전 대표 B씨와 경찰과의 유착을 방증하는 것이며 전북 CBS가 입수한 문건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전체 일계표를 놓고볼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유착 의혹의 배경에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책임비율 등에서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밤 10시쯤, 전주시 효자동 전일고 인근 4거리에서 발생한 동료기사 사고현장에 나가보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전 대표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여기 또 대박났어!”라는 대화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 택시회사 대표 B씨는 ‘○○직원’, ‘○○직원’ 등으로 일계표에 적혀있는 것은 경찰관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불특정 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이며 유착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경조사 명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굳이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 비용을, 일부 경찰관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직원’이니 ‘○○직원’이란 단어를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

이와 관련해 B씨는 “지인들이 사는 지역이 ○○구 쪽이면 ○○직원으로, ○○구 쪽이면 ○○직원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식	대	21,000		
컴	사	비		
조	합	비(복지비)	240,000	1.
잡	비	100,000	원산	5.
퇴	직	금(보험)		8.
이	자			1.

(사진 2)

B씨는 또 “개인택시를 미끼로 기사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빼앗기 위해 현 사장을 중심으로 일부 기사들이 작당을 하고서 음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택시를 둘러싼 택시업계 비리가 경찰 유착으로까지 의혹의 파장을 넓히고 있어 이들 사이의 진실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신청취지1

〈2014 전북조정 24·25〉

1.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택시업주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기사가 전주완산경찰서 관할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비율 등에서 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들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 그들과 수시로 만나며 야유회나 모임을 할 때마다 돈을 주었고, 사고현장에서부터 조사 경찰관이 택시업주와 유착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일계표상 돈이 지급된 사용처에 ‘○○직원’ 또는 ‘○○’이라 기재된 것을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과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위 경찰관들은 책임비율에 관여치 않고 해당 보험회사끼리 조정하며, 또한 택시업주와 모임을 갖거나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야유회를 간 적이 없을 뿐더러 일절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사고현장은 물론, 일계표도 위 경찰관들과 아무 관련없는 등 택시업주와 전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찰관들 사이에 아무런 유착관계가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2,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취지2

〈2014 전북조정 27·28〉

1.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개인택시 취득을 미끼로 택시 업주가 기사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일계표를 근거로 택시업주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책임비율 등에서 경찰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 경찰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경찰관들이 야유회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돈을 준 것처럼 보도하면서 전 택시회사 대표의 말을 인용하여 마치 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과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관은 책임비율에 일체 관여치 않고 해당 보험회사끼리 조정하며, 또한 택시업주는 경찰관과 모임을 갖거나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야유회를 간 적이 없을뿐더러 일체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일계표도 경찰관과 관련 없는 등 택시업주와 경찰관 사이에 아무런 유착관계가 없어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택시업주·전북 경찰 연루 의혹 ‘사실 무근’으로 확인돼

나. 내용 : 전주 소재 모 법인택시 업주와 경찰이 유착한 의혹이 있어 전북경찰청에서감찰에 착수했다는 CBS 보도와 관련해 감찰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유회비 명목으로 의혹이 제기된 2013년 8월 26일자 잡비 지출액 오십만원은 일계표상 자체로 오만원일 뿐이며, 누계가 오십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법적으로 교통사고시 경찰이 민사 책임비율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 보험회사끼리 조정하고, 전주 ○○경찰서 및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 경찰관들은 책임비율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택시회사 전·현 업주 및 2013년 당시 교통조사 부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택시 전 업주가 경찰관들과 모임을 갖거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작년 7월 신호위반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부분과 관련해 조사 결과 당사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확인한 사건으로 경찰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업주 A씨 조사 결과, 해당 일계표의 ‘○○ 또는 ○○ 직원’ 표현은 전 업주의 지인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출금전표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 업주 역시 이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을 거주지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경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경찰관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 피신청인은 전재 계약관계에 있는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란에 게재되어 있는 2건의 기사(「택시업주 비리에 전북 경찰관 연루 의혹」 및 「「제식구 감싸기?...택시업주·경찰 연루 의혹 감찰 ‘논란」 제하의 기사)를 2014년 9월 12일 12시까지 각 포털사이트 뉴스란 검색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1항의 기사가 같은 시간까지 노컷뉴스 전북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 합의서를 빌어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한다.
 <저희 전북CBS 노컷뉴스는 취재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보도로 ○○경찰서 및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관리)계 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상기 합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다른 청구를 전부 취하한다.

2014. 09.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노컷뉴스 - 『택시업주·전북 경찰 연루 의혹 ‘사실 무근’으로 확인돼』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1일자 지역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11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328 정정청구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경제
중 재 부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특집기획기사-네덜란드 편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 4강 진출국이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축구팬인 신청인은 네덜란드는 2006년 독일 월드컵 4강에 들지 못했으며, 당시 네덜란드가 아닌 독일이 4강에 올랐는데도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조정신청에 앞서 피신청인 측에 정정을 요청했는데도 1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않고 방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에 관한 보도가 아니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 매일경제 - 『2014 Brasil -네덜란드』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7일자 33면)
- 내 용 - 2002 한·일월드컵에서는 한국, 터키가 이변의 주인공이었고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가 쟁쟁한 남미 라이벌을 따돌리고 4강에 진출했다. 1998 프랑스월드컵에서는 당시 득점왕을 차지한 다보르 슈케르를 앞세운 크로아티아가 8강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라 기존 강호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하며 ‘오를 팀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남미 국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브라질 이탈리아가 4강에 오른 1978 아르헨티나월드컵 이상의 4강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3·4위전도 결승전에 맞먹는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매일경제 스포츠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아르헨 VS 네덜란드”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목** : ‘2006 독일월드컵 4강 진출 국가’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7일자 A33면에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하며 ‘오를 팀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남미 국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이** 4강에 진출”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매일경제 2014. 7. 7.자 33면의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관련 기사 중 “2006 독일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4강에 진출”했다는 내용과 관련, 2006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국가는 ‘네덜란드’가 아닌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오보로 인해 기억력의 혼란 및 정신적 피해 등을 받았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어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9. 12.

❖ 사례 12

신청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무료신문 메트로가 휴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347·1348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메트로신문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셜뉴스 (위키�트리)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4. 08.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모 대학강사가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편집·인용 하면서 지난 5월 1일부터 오프라인 발행을 잠정 중단한 세계 최대의 무료신문인 메트로가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발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강사의 원고에는 메트로가 휴간 중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실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최소 24페이지 위주의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고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해 즉각적으로 기사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이 해당 강사의 원고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첨언한 점, 광고주 등이 휴간한 것으로 인식해 광고영업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사삭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단순과실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영업상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할 것을 권유하자, 조정대상 기사를 편집했던 디자인 업체가 피신청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위키�트리 -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제하의 기사 (2013년 8월 4일자 미디어면)

- **내 용** - 19세기 말 영화가 등장하여 영상매체 시대를 연 이후 라디오가 영화를,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다시 케이블 텔레비전이 지상파 텔레비전을 주도적인 매체의 지위에서 밀어내는데 걸린 기간은 대략 3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의 등장 이후 새로운 물결이 주도 매체를 밀어내는 시기는 더 짧아졌습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수년만에 시장을 선도하는 매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무료신문 메트로가 창간되면서, 절정기였던 2008년까지 10여 종 이상의 무료신문이 등장했습니다.

종합일간신문이었던 메트로와 포커스, AM7, 시티, 노컷뉴스에서부터 스포츠일간, 경제일간, 남성주간지, 지역일간에 이르기까지 무료신문은 인쇄매체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발행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신문산업 전체의 위기와 더불어 무료신문은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AM7과 시티가 휴간했고, 2014년 4월 말에는 메트로와 함께 발행부수 30만 부의 업계 1, 2위를 다투던 포커스마저 휴간에 들어갔다. 이제는 메트로와 데일리노컷뉴스가 무료신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료신문은 2002년 등장 이후 유료로 공급되는 종합일간신문을 속보경쟁 시장에서 밀어내고, 스포츠일간을 스포츠기사와 신문만화 시장에서 밀어냈습니다.

무료신문에 밀린 종합일간신문은 속보나 통신기사 위주의 편집에서 탈피하여 기획기사와 의견기사 중심으로 편집을 재편했고, 스포츠일간은 성인대상 주간신문과 성인잡지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스포츠일간에 밀린 성인잡지는 다시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사생활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폭로성 인물기사(celebrity)에 집중했죠. 가히 게르만족을 밀어내고 우크라이나 평원을 점령한 훈족의 기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료일간은 단지 경쟁자를 시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료신문의 12년 명암

무료신문이 기존의 유료 신문독자 시장을 잠식했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대다수의 새로운 독자는 신문을 읽지 않던 20~30대였거나, 점차 포털사이트에 실리는 통신기사와 차이가

없는 유료신문을 떠났던 독자였습니다.

무료신문이 등장하기 이전에 20대 젊은 독자에게 신문 읽기는 입사 준비나 논술 대비를 위한 ‘고달픈 노동’의 하나였죠.

그러나 단문과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기사를 제공하는 무료신문은 신문 읽기를 ‘즐거운 일상’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특히 유료신문의 주의주장과 은유가 포함된 뒤틀린 신문문장은 독자에게 ‘까다로운 읽기’를 요구하지만, 무료 신문은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신문 읽기를 ‘3분간의 여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와 여가, 여행 등 라이프 스타일의 기사는 물론, 까다로운 시사정보와 사회적 이슈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함으로써 젊은 독자에게 ‘신문 읽기의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료신문은 젊은 기사를 채용하여 젊은 독자에게 맞는 기사 유형과 글쓰기를 개발했으며, 기존의 대판 중심의 획일적인 신문 편집을 타블로이드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으며, 신문을 ‘읽는 매체’에서 디자인과 그래픽을 바탕으로 ‘보는 매체’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옮겨간 젊은 독자들

AM7에 이어서 포커스까지 휴간에 돌입한 것은 부채 감소를 위해 발행부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무료신문 매출액은 전년대비 -35.1%였으며, 당기순이익은 -70.73%였습니다.

또한 2013년까지 발행됐던 포커스와 메트로의 2012년도 매출액은 2008년도와 비교하여 60.76% 수준인 494억 원이었습니다.

무료신문은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판매수익이 없고 모두 광고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독자들이 신문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전체 신문 광고 시장의 5~6%대를 차지하던 무료신문의 광고수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신문인쇄비와 가두 배포 및 거치대 운영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신문 광고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매체 광고 시장에서 신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까지 41.3%로 40%대를 유지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5년 23.7%로 2011년에는 15.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신문 인쇄용지의 가격 인상도 한몫을 했는데요.

신문고지(읽고서 수거하여 재생용지 제작에 재활용되는 종이)는 1t당 10만원대에 거래 되지만, 신문 인쇄용지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지회사들은 1t당 70~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지 가격과 용지 가격에 차이가 큰 것은 신문 발행부수가 줄어들어서 고지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신문 인쇄용지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료신문의 독자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매체 환경 변화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3년 발행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텔레비전(170.7분→176.9분)과 인터넷(108.6분→116.3분)은 증가한 반면, 종이신문(15.7분→12.0분)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 시간에서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동형 인터넷(41.4분→53.7분)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용 PC를 비롯한 고정형 인터넷(67.2분→62.6분) 이용은 감소했습니다.

신문기사의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복수응답),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이동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 수용자가 5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19~29세의 85.6%, 30대의 79.2%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문기사를 이용했습니다.

젊은 층의 높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문기사 구독은 무료신문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략>

위 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하는 신문과 방송 7월호에 실린 한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심○○ 강사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위키트리(<http://www.wikitree.co.kr>)의 홈페이지 미디어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메트로 - 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미디어면 초기화면에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라는 제목으로 메트로신문이 휴간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트로신문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신문은 현재까지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관련 정정보도문
- 나. 내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미디어면 초기화면에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라는 제목으로 메트로신문이 휴간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트로신문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4년 9월 18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위키트리(www.wikitree.co.kr)의 미디어면의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기사생산자인 (주)○○○○연구소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4년 9월 22일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기사생산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9.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위키트리 - 『‘메트로-포커스 휴간으로 본 무료신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 미디어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 례 13

신청인 회사의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고 보도됐으나 신청인 회사는 OEM 제조업체일 뿐이다.

사 건	2014서울중재11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0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최근 일간지 등에 어린이 성장촉진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제품 및 제조회사명을 적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판매자의 주문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불과하며, 따라서 해당 제품을 광고하거나 영업할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해당 제품을 과장광고한 혐의로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2014서울조정 1290)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보건·복지면)

- **내 용** -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2개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간지 등에 이같이 허위·과대 광고한 한국○○○○○의 ‘○○○골드’와 ○○○의 ‘정○○ ○○○○ 플러스’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골드는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정○○ ○○○○ 플러스도 뼈 성장과 골다공증 치료·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캔디류·기타가공품)”이라며 “이들 제품의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나 일간지 등에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의 홈페이지(<http://news.khan.co.kr>)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 문** : 인터넷 경향신문은 지난 8월 1일 『키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간지 등에 이같이 허위·과대 광고한 한국○○○○○의 ‘○○○골드’와 ○○○의 ‘정○○ ○○○○ 플러스’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과대 광고로 적발된 적도 조사받은 적도 없고 ‘정○○ ○○○○ 플러스’ 제품을 OEM방식으로 제조한 업체일 뿐 ‘정○○의 ○○○○’ 허위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재대상기사(「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의 본문 하단에 [별지 1]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신청인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인터넷 경향신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 나. 피신청인은 2014. 8. 1. <인터넷 경향신문>에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의 ‘정○○ ○○○○ 플러스’ 등 2개 제품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 ○○○○ 플러스’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에 의하여 이를 생산하였을 뿐 그 광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위·나. 기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다(2014서울조정1290).
- 라. 당사자들은 이 사건 조정절차 중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전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14. 9. 4.).

2. 판단

-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보도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 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반식품인 이 사건 제품을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적발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처의 보도자료 및 식약처 담당자를 통한 확인과 이 사건 신청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판매자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 또는 광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식약처에 적발되거나 조사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앞의 1.의 나. 보도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09. 05.

〈별 지〉

- 제목** :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 본문** : 본지는 지난 8월 1일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적발.제하의 기사에서 식약처가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의 ‘정○○ ○○○○ 플러스’ 제품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굿○○는 해당 제품을 OEM 방식으로 제조한 업체일 뿐, ‘정○○ ○○○○ 플러스’ 광고와 관련해 적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와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른 보도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다 음 - 『키 크는 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5일자 사회면)

- 내 용 -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 사 례 14

육군 군 검찰이 윤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24, 2014서울조정1425(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육군본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육군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증거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해 동일한 출처의 동일한 날짜, 같은 번호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록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군 검찰이 수사기록 중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치가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증거서류 제출과 부검의 증인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와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에 등재된 문서번호는 송치번호로서 동일한 사건에는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피신청인 측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다소 부정확한 취재가 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경향신문 -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3일자 3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13일자 국방면)

- **내 용** -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헌병대의 최초 사건보고 등 초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서류 12건을 의도적으로 빼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2일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사기록 중 헌병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기록목록’에 등재된 상당수 문서들이 증거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빠진 기록들은 ○○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의견서’ ‘발생보고’ ‘수사보고’를 비롯해 ‘사망자 발생보고 및 시체처리지휘요청서’ 등이다. 육군중앙수사단 제○지구수사대가 작성한 ‘상해 치사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와 윤 일병 소속 부대인 ○○○포병대대의 ‘사건상황보고 (최초)’도 빠졌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사단 헌병대의 ‘검시사진’ ‘사고현장약도’도 빠졌지만 목록에 2번 중복 기재돼 있었다. 첫 번째는 없었지만 두 번째 등재 쪽수에는 해당 문서가 있었다. 다만 같은 문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최초 군 헌병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기록목록’ 문서. 최초 사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각종 보고서 제목 옆에 체크(V) 표시 혹은 동그라미(O) 표시가 돼 있고 이 문서들은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최초 윤 일병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현재 윤 일병 사망 원인을 두고 군에서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라고 밝힌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구타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일병 사망 원인은 주요 가해자인 이모 병장의 살인죄 적용 여부,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자료들이 무더기로 빠진 것은 군 검찰이 외부로 유출되면 곤란한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증거자료는 재판부에 제출되면 변호인 등의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빠진 자료 제목 위에는 체크(V) 표시 혹은 동그라미(O) 표시 등이 돼 있기도 했다.

특히 빠진 자료 중에는 ○○사단 헌병대가 사건 다음날인 4월7일 늦은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국방부’ 순으로 보고한 15쪽 분량의 문서로 추정되는 ‘조사결과보고’도 있다. 이 보고서는 ‘가래침 핏기’ 같은 엽기적 가혹행위 등 사건 전모가

들어 있어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 대처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 8일 오전 7시10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1쪽짜리 서면보고를 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나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사건 전모를 파악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며 실무자에게 부실보고와 대처 책임만을 물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군 관련 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이런 기록들은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 사건에서 모두 재판부에 제출된다”며 “빠진 기록들이 하나같이 최초 윤 일병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축소·은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민간으로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에 올린 사건보고 같은 걸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일부 기록들을 뒤늦게 제출했다.

공판조서에 따르면 군은 기소 후 첫 번째 공판에서 부검 감정서에 딸린 부검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 가해자 변호사가 두 번째 공판에서 군 검찰이 제출한 부검 감정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뒤늦게 부검 사진을 제출하고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은 세 번째 공판에 처음 제출했다. 의무기록에는 구타에 의한 과다출혈과 쇼크사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수혈과 대량의 항생제 투여 내용이 있었다.

최초 윤 일병 사건 발생 당시 군의 설명도 의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후 7시쯤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기도폐색에 의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각에는 어떤 의료진도 ‘기도폐색’을 언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성모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현병대 등의 검시조서에도 사인이 ‘미상’ 혹은 ‘불상’으로 기록돼 있다. ‘기도폐색’을 처음 언급한 것은 5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통보한 부검 감정서였다.

부검의는 감정서에서 기도폐색 추정 결론을 내면서 ‘민간병원 의사에 따르면 최초 사망자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썼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최초 기도폐색 설명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뇌부종이 기록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군 수사기관이나 지휘부에서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수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정대상보도2

- **경향신문** -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2일자 8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2일자 국방면)

■ **내 용** -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 제출 시 누락시킨 주요 서류들(경향신문 8월 13일자 3면 보도)에서 기록 조작 의혹과 초동수사 실패가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사단 헌병대는 4월 15일 수사 결과 보고에서 “연천의료원 의사에 따르면 윤 일병 도착 당시 맥박 및 심장은 뛰고 있었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고 썼다. 다른 곳은 멀쩡했으나 ‘기도폐쇄’만 문제였다고 설명한 셈이다.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한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왼쪽 사진)와 3차 공판에서부터 제출된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오른쪽). 두 서류는 동일한 28사단 헌병대가 같은 날짜, 같은 서류번호(사진 속 실선 네모)로 작성했음에도 전혀 다른 내용(점선 네모)을 담고 있어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당시 윤 일병 의무기록에는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고 돼있다. 4월 8일 발급된 이 의무기록은 헌병대가 4월 15일 군 검찰에 송치 시 넘긴 서류목록에서는 빠져 있다. 군 검찰도 이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내놓지 않다가 3차 공판에서 처음 제출했다. 갑작스러운 기록의 출처에 대해 군 당국은 헌병대가 5월 13일 ‘제14-27호’ 서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이미 제출된 같은 출처의 같은 날짜, 같은 번호의 서류가 존재했다. 수사기록상 5월 13일 ‘제14-27호’는 의무기록과는 전혀 다른 부검 감정서 추송 서류다. 서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은 유족 대상 수사설명회(4월 8일)에서 사건 당일인 4월 6일 오후 5시 25분 헌병 수사관이 윤 일병이 있는 국군양주병원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때 구타 흔적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헌병대는 오후 8시 35분 “내일 조사하겠다”며 철수했다. 사고 당일 육군본부 수사기관 관계자들 역시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단순 질식사’라는 보고에 별 조치 없이 해산했다. 폭행 사실은 한 병사 신고로 알려졌고, 헌병대의 본격 수사는 사건 이튿날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4월 7일 오후 1시 40분에야 헌병대로 임의동행됐다. 이 틈에 증거인멸이 시도됐다. 피해자를 폭행한 52cm 크기 빗자루와 전기스탠드는 4월 11일 야산과 쓰레기장에서 수거됐다.

군 수사당국은 이처럼 초기수사 실패가 드러나자 적어도 윤 일병 ‘질식사’는 제대로 파악

했다고 면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4월 7일까지 체포영장 등에는 ‘뇌부종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기록만 있었다. 뇌부종은 기도폐색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심정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병대는 8일 아침 군 검찰에 윤 일병 시신 처리지휘를 요청하면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추정”이라 썼다. 부검 전에 사인을 결론낸 셈이다.

조정신청취지

1. 신청인은 “경향신문” 정치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본문활자와 같게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 중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 (<http://www.khan.co.kr/>)의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1〉

- 가. 제목 :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내용 : 지난 8월 13일자 정치면에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육군 군 검찰이 육군 ○○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증거를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 검찰에서 수사기록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에 입각하여 증거가치가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증거로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해당 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공찬절차 상 증거서류 제출과 부검의 증인신청 역시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적시에 진행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육군 ○○사단 보통검찰부는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균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제출했으며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 및 법률적 검토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여 육군본부 법무실 및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확한 보도를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2〉

가. 제목 :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지난 8월 22일자 정치면에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라는 제목으로 육군 ○○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해 같은 출처의 같은 날짜, 같은 번호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록 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게재된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와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는 같은 날(‘14. 5. 13.) 오전, 오후에 각 추송된 다른 서류로서 추송 서류 전건이 동일한 사건(윤 일병 사망 사건)의 관련 서류임에 따라 송치번호(송치번호는 사건번호와 같이 현병에서 군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번호이며 사건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 인해 같은 날짜, 같은 송치번호가 기재된 것일 뿐 해당기사와 같은 증거 서류 조작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여 육군본부 법무실 및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확한 보도를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윤 일병 사망 사건’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지난 2014년 8월 13일자 정치면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및 2014년 8월 22일자 정치면 <윤 일병 사건 ‘같은 번호 다른 내용’ 두 서류… 군, 조작 흔적?>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 검찰이 수사기록 중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치가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증거서류 제출과 부검의 증인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또 윤 일병 부검결과 서류와 윤 일병 의무기록 사본 서류에 등재된 문서번호는 송치 번호로서 동일한 사건에는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4년 9월 24일(수)(토, 일요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014년 9월 23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09.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3일자 종합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23일자 종합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❶ 사 례 15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 건 2014서울조정1469 · 1470~2014서울조정1493 · 1494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 외 16개사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4. 09.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재심 청구소송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발각돼 법원이 신청인을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무고발했으며, 신청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014. 6. 12. ‘신청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추후보도와 함께 언론사마다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 추후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다만, 연합뉴스와 뉴스1은 무죄판결 직후 관련 내용을 후속보도했다는 점에서 청구이익이 없어 기각결정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소송당사자가 법원 재심청구 과정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언론들이 법원의 공신력있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1

- 온라인 중앙일보 -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이인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는 올해 4월 황당한 사건을 맡게 됐다. 채씨(63)씨가 “2009년 3월 선고한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문이 집에 도착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채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세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연히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1억 3000만원은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채씨는 “부가세 1억 6000여만원 중 1억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집에 도착한 판결문에는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잘못 적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채씨는 법원 직원이 발급해 준 것이라며 ‘1억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하려고 했다. 그러다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판사들이 평소 쓰는 문체나 글자체가 아니었다. 한눈에 봐도 티가 났다. 띄어쓰기·맞춤법 같은 기본 양식도 틀린 부분이 많았다. 판결문 끝에 적힌 재판부의 서명도 잘못 적혀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판결문이 가짜임이 속속 드러났다. 채씨가 법원 직원에게 발급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문제의 판결문은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채씨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원 기자실에 찾아와 가짜 판결문을 소개하며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다.

결국 법원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며 “판결문을 위조해 재판의 신뢰를 훼손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2

- **쿠키뉴스 - 『위조한 판결문 증거로 제출 ‘간 부은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간 큰 원고가 법원에 적발됐다

2009년 3월 채모(53)씨는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1억 6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3000여만원에 대한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채씨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판결문이 가짜라며 지난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판결 당시 재판장이 1억 6000여만원 중 1억 2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직후 법원 직원이 건넨 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취소 금액이 3000여만원으로 조작돼 있었다는 것이다.

채씨는 재심 재판 중 선고 직후 법원 직원에게 받았다는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은 기재방식, 글자체, 내용, 맞춤법까지 모두 엉터리였다. 심지어 법원 직원이 “판결문을 출력해 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자, 채씨는 이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법원 내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해당 판결문이 등록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형식적·내용적 오류가 다수 존재한다”며 소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채씨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직무 고발할 방침이다.

조정대상보도3

- **인터넷 매일신문 - 『세금 더 돌려받으려고 판결문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세금소송을 벌이던 한 60대 남성이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가짜 판결문을 만들었다가 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채 모(63)씨는 지난 2009년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채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된 세금 1억 60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채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동대문세무서장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확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채씨는 지난해 10월 이 판결내용과 전혀 다른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에서 채씨는 “1심 선고공판 때 재판장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1억 1300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선고 다음날 민원실 직원에게 받은 판결문에도 이렇게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씨가 민원실 직원에게 받았다는 판결문에는 부가가치세 취소금액이 3000만원이 아닌 1억 1300여만원으로 돼 있었다.

그는 “선고공판이 있는 지 며칠 후 송달된 판결문에는 ‘3000만원만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 판결문은 원고 측 변호인과 피고, 법원이 공모해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달리 위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형식적·내용적 오류가 존재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씨가 위조한 판결문은 법관들만 사용하는 판결서체가 아니었고 부가가치세액 계산표가 있어야 할 별지도 빠져 있었다. 게다가 주문이나 이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원실 직원이 그 판결문을 줬다고 우기며 “그러한 판결문을 출력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한 사안이어서 그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4

- 인터넷 MBN - 『판결문 위조해 재심청구한 60대 딸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 가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채 모 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는 한편, 채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1억 6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처분받은 채씨는 지난해 10월 부가가치세 일부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위조, 증거로 제출해 딸미가 잡혔습니다.

조정대상보도5

- 인터넷 YTN - 『판결문 위조해 법원 속이려다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세금 관련 재판에서 이기고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재심을 청구한 50대가 판결문 위조 사실이 발각돼 고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53살 A 씨는 지난 2009년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3천만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나자 재판장이 1억 2천만원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판결문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고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보도6

■ 뉴시스 - 『‘위조 판결문 제출’ 간 큰 소송 당사자 탈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부가가치세 소송 당사자가 위조 판결문을 증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가 재판부에 발각돼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모(63)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심청구 소송에서 “재소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조 판결문을 제출하는 등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채씨는 2009년 2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 중 약 3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채씨는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가 3000만원이 아닌 1억 13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채씨는 “송달된 판결문은 피고 측과 법원이 공모해 위조한 것이고, 자신이 선고 직후 법원 직원 A씨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판결문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위조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아가 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자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사실 조차 없고 명백한 형식적, 내용적 오류가 다수 존재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A씨의 증언 내용이 일치하는 점을 볼 때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법원 측은 채씨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한 사안이어서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7

- **아시아경제 닷컴** - 『**법원, 위조판결문 제출한 소송당사자 ‘직무고발’하기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행정소송 당사자가 위조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들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다음주중 당사자 A씨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할 예정이다.

법원은 A씨가 ‘해당 판결문을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법원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A씨가 ‘처분받은 부가가치세 액수를 낮춰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위조됐다”고 결론짓고 소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1억 61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재판장이 “3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을 때도 판결주문이 이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히려 진짜 판결문에 대해 “법원과 구청, 자신의 변호인이 공모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위조된 것이라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결 확정 후 30일을 훨씬 넘겨 제기한 소송이므로 제소가능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형식적·내용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서체’는 법관이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에만 지원되는 글씨체인데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다른 글씨체로 작성된 점, 일부 내용이나 표현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재판부 서명란의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민원실 등 직원은 법관이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A씨에게 판결문을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는 법원직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보도8

■ e머니투데이 - 『판결문 위조해 증거제출한 60대, 직무고발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 위조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60대가 직무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모씨(63)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는 한편 채씨를 직무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은 법원전산시스템 내에 등록되지 않는 판결문”이라며 “그 내용이나 기재방식에 오류가 많아 누군가가 급조한 흔적이 역력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이 사용하는 ‘판결서체’가 아닌데다 민원실 직원 역시 당시 판결문을 출력해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문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의 신뢰를 훼손한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채씨를 직무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처분 받은 채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2009년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채씨는 지난해 10월 1억 1300여만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며 법원에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발급받은 판결문과 달리 변호인에게 송달된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채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민원실 직원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했으며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할 예정이었으나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에 위조 흔적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했다.

조정대상보도9

■ 뉴스 1 - 『위조 판결문 제시해 재심 청구하다 덜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위조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발각돼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의 원고를 직무고발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3000여만원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면서 1억 1300여만원의 취소를 명하는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해 재판부를 속이려 한 채모씨(63)의 재심을 각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현재 채씨에 대한 직무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채씨가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제출한 판결문에서 위조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판결문에 쓰이는 글씨체가 사용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문장이 사용됐다”고 위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채씨는 재판정에서 “법원직원 권모씨로부터 판결문을 출력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씨에게 판결문을 출력해준 적이 없다는 권씨의 주장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채씨를 직무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씨는 권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009년 2월 제2기 부가가치세 1억 6000여억원의 부가처분 중 1억 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같은 해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판결문을 제출했다가 법원에 의해 발각됐다.

조정대상보도10

- 인터넷 서울경제 -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 큰 소송 당사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한 60대 소송 당사자가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내밀며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판결문 위조 사실이 들통나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C(63)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심에서 C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1억 6,000만여원 중 1억 3,000만여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C씨는 판결 내용과 자신이 받은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다며 지난해 10월 재심 소송을 냈다. C씨가 법원 직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판결문에는 1억 3,000만여원 부분이 ‘3,000만여원’으로 달라져 있었다는 것. C씨는 “피고와 법원이 짜고 판결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심리 끝에 지난 4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려던 재판부는 미심쩍은 사실을 발견하고 재판을 다시 열었다. C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서 위조의 흔적이 보인 것이다. 조사결과 C씨가 낸 판결문은 판사들이 쓰는 문체나 글자체로 돼 있지 않았고, 띄어쓰기나 들여쓰기, 맞춤법 같은 기본적인 양식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씨한테 판결문을 뽑아 줬다는 법원을 증인신문하고 법원행정처 판결문 시스템까지 뒤져 판결문 위조 사실을 확인했지만 C씨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보도11

- **매경닷컴** - 『**판사 속이려다 … 판결문 위조한 소송인 털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위조한 판결문을 증거로 세금소송 재심을 청구했다 들통 난 청구인이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A씨(63)는 2009년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1억 6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취소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이 판결이 조작됐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이 선고할 때는 취소금액이 1억 2000만여 원이었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 금액이 300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원래 판결문이라고 제출한 증거는 띄어쓰기, 들어쓰기, 맞춤법 등 기본적인 양식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재판부는 법원 직원 증인신문, 법원행정처 직권 사실조회를 통해 판결문 위조를 확신했다.

조정대상보도12

- **인터넷 한국일보** - 『**판결문 위조해 세금 환급 소송 ‘간 큰 남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악한 가짜 판결문을 만든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3년 전 확정 판결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한 간 큰 남성이 재판부에 적발돼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자영업자 채모(63)씨는 2009년 2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 중 1억 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3,000여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채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뒀다.

채씨는 “당시 법원 민원실 직원을 통해 내가 직접 수령한 판결문과 내 법률 대리인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主文)이 다르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조작한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채씨가 낸 판결문의 주문은 “1억 6,000여만원 중 3,6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것. 이 주문에 따르면 채씨는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1억 2,4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돌려받은 것이 된다.

재심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와 함께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자 금세 조작 사실이 들통이 났다. 채씨가 내놓은 가짜 판결문은 판사들이 워드프로세서에서 쓰는 서체로 돼 있지 않아 한 눈에 가짜 티가 났고, 띄어쓰기나 들어쓰기 등 맞춤법 오류가 35건이나 되는 등 기본적인 양식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를 바탕으로 판결문 위조 사실을 추궁했지만 채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채씨에게 판결문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민원실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원 기자실을 찾아와 기자들을 상대로 가짜 판결문을 진짜인 양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재심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이 사건의 재심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채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측은 조만간 채씨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정대상보도13

- 동아닷컴 - 『가짜 판결문으로 법원 속이려 한 ‘간 큰’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판결문이 이상한데...’

서울행정법원의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 손철 판사는 최근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원고가 증거로 낸 1심 판결문이 법원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것과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판결서체’도 아니었고 띄어쓰기, 들어쓰기, 맞춤법이 35군데나 틀렸다. 판결문에서 쓰지 않는 표현도 있었다.

원고 채모 씨(63)는 2009년 ‘부가가치세 1억 6106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는 “1심 재판장이 법정에서 ‘1억 2413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그대로 적힌 판결문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3052만원만 취소하는 것으로 내용이 달라져 있었다”며 자신이 맨 처음 받았다는 1심 판결문을 첨부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심 제소기간이 지나 소를 각하하려 했지만 채 씨의 주장대로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채 씨가 판결문을 위조한 사실을 알아챘다.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하고 채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채 씨가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원 기자실을 찾아가 위조 판결문을 내놓기도 했다”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대상보도14

- 노컷뉴스 - 『‘간 부은(?) 50대’…세금 환급 더 받으려 판결문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세금 관련 재판에서 이기고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재심을 청구한 50대 남성이 판결문 위조 사실이 발각돼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A(53)씨는 지난 2009년 3월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 중 3000만원의 부과를 취소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이 나자 ‘재판장이 “1억 2000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직후 법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1억 2000여만원’부분이 ‘3000여만원’으로 달라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확인 결과 A씨가 낸 판결문은 오타자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30군데가 넘었고, 판결문 맨 뒷부분에 나오는 재판부 서명란도 어색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 증인신문과 법원행정처 직권 사실조회 등을 통해 판결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A씨는 끝까지 위조사실을 잡아뗐고, 급기야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법원은 A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보도15

- 인터넷 법률신문 - 『위조판결문 제출해 재심청구…형사고발 처지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내 용 - 법원 직원이 출력해준 판결문이라며 위조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소송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채모씨가 “법원 직원이 출력해준 판결문과 달리 송달된 판결문은 선고 내용과 다르다”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사건(2012재구합55)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각하 판결을 선고하려다 채씨가 법원 직원이 출력해줬다며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서 위조의 흔적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해 이날 선고에 이르렀다. 채씨는 증인으로 나와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까지 했고, 법원은 채씨에 대해 직무고발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재심 소송을 냈기 때문에 재심청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면서도 “채씨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송달 판결문의 위조 여부는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대상 판결을 한 재판부는 2009년 2월 채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억 6000여만원의 부과처분 중 ‘3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면서 “반면 채씨는 같은 날 재판장이 부가가치세 1억 6000만원 중 ‘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다음날 법원 직원이 출력해 준 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채씨의 대리인과 법원이 공모해 판결문을 위조해 송달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작성하는 판결문은 법관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만 지원되는 ‘판결서체’로 작성된다”며 “채씨가 법원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비슷한 글씨체로 작성되긴 했으나 ‘판결서체’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씨가 재심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법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문장으로 돼 있다”며 “재판부 서명란에도 오류가 있어 도저히 법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채씨가 판결문을 위조하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법원 직원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2009년 2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와 법원이 공모해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명백히 달리 송달된 판결문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조정대상보도16

■ 한국국정일보 - 『‘위조 판결문’ 증거로 내…법원, 직접 검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재판 당사자가 “가짜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냈다 들통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역대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낸 채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채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판결문 진본을 교묘히 위조한 가짜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채씨가 낸 가짜 판결문이 진짜 판결문과 겉모습은 매우 흡사하지만, 글씨체가 다르고 일부 문장과 단어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재판 당사자가 판결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꾸며 증거로 제출한 일이 극히 이례적인데다, 법원 직원이 고의로 판결문을 고친 것처럼 누명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채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씨는 지난 2009년 서울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내 부가가치세 3천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채씨는 그러나 법원의 실수로 세금 환급액이 1억 천3백여만원에서 3천여만원으로 줄었다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확정 판결문을 위조해 재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정대상보도17

- 연합뉴스 -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러다 들통, 간 큰 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악한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미 3년 전에 결론 난 세금소송의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가 심리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A(53)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1억 6천여만원 가운데 3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장이 “1억 6천여만원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직후 법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1억 2천여만원’ 부분이 ‘3천여만원’으로 달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여서 재심 청구를 각하하려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올해 4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심 청구 사유가 사법부 신뢰 문제와 밀접하기도 해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한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아연실색했다.

A씨가 낸 판결문은 판사들이 쓰는 문체나 글자체로 돼 있지 않아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게 티가 났다. 띄어쓰기, 들어쓰기, 맞춤법 등 기본적인 양식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맨 뒷부분 재판부 서명란에도 오류가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 증인신문, 법원행정처 직권 사실조회를 통해 판결문 위조를 확신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위조 사실을 잡아챘다. 그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법원 기자실에 직접 찾아와 가짜 판결문을 소개하며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다.

결국 법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A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1

1. 피신청인은 온라인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추후보도문〉

- 가. 제목 : 행정법원이 위조 혐의고발, 2심서 무죄판결 받아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허위사실로 밝혀져
- 나. 본문 : 온라인중앙일보는 2012. 10. 29.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63)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당사자는 2014. 6. 12. 서울중앙지법(형사9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달 20일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취지2

- 쿠키뉴스 외 15개 매체

<조정신청취지 1 참조>

사건처리결과

추후청구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연합뉴스, 뉴스1은 기각)

손배청구 - 각 기각결정

결정사항 1

주 문

가. 신청인의 2014서울조정1461 추후보도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온라인 중앙일보> 홈페이지 사회면에 오전 10시부터 [별지]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 대상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 대상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나. 신청인의 2014서울조정1462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12. 10. 29.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판결문 위조해 증거로 낸 간 큰 60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63)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무고발을 했으며, 신청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014. 6. 12. ‘신청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추후보도와 함께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신청인의 이 사건 추후보도 신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이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후보도를 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 여부를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 재심 청구 과정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가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021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12. 10. 28.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문을 위조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했다가 발각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해 법원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고, 이후 피신청인을 포함한 여러 언론이 법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당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의 보도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 및 지득 경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결정하기로 한다.

2014. 10. 08.

결정사항 2

2014서울조정1463·1464 ~ 2014서울조정1475·1476

2014서울조정1479·1480 ~ 2014서울조정1491·1492

〈결정사항 1 참조〉

결정사항 3

2014서울조정1477·1478(뉴스1)

2014서울조정1493·1494(연합뉴스)

주 문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및 신청인 주장**

- 가. 피신청인은 2012. 10. 28.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위조 판결문 제시해 재심 청구하다 덜미”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법원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채모 (63)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 라 한다).
- 나.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직무 고발을 했으며, 신청인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014. 6. 12. ‘신청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및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해를 보았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추후보도와 함께 60,000,000원의 손해배상 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추후보도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죄가 확정된 이후인 2014. 7. 31. 〈판결문 함부로 고쳤다가 흥역 치른 60대〉 제하의 후속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행정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경위, 그리고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조정을 구하는 신청 취지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추후보도 신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 15조 4항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추후보도 청구는 기각한다.

3.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 여부를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 재심 청구 과정에서 위조한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가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인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021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12. 10. 28.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문을 위조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했다가 발각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해 법원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고, 이후 피신청인을 포함한 여러 언론이 법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당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의 보도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 및 지득 경위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결정하기로 한다.

2014. 10. 0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온라인 중앙일보 외 14개 매체 - 『60대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4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 사례 16

종합격투기 이벤트를 개최하는 ○○FC 부대표가 시합 중 급소를 맞고 쓰러진 선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3637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헤럴드경제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4. 12. 10.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이종격투기 선수가 상대방 선수로부터 두 차례 급소를 가격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관중석에 있던 가수이자 소속사 부대표가 오히려 해당 선수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실시간 검색 기사 형태로 제목만 바꿔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무거워진 경기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카메라에 익살스런 표정을 지어보인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네티즌의 커뮤니티 게시판 글을 사실인 것처럼 심어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포털 및 인터넷신문에 노출시켜 이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1

- 인터넷 헤럴드경제 - 『○○FC 이○○, 2차례 낭심 가격에 쓰러졌는데…박○○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 논란』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헤럴드POP면) 외 7건

- **내 용** - ‘○○FC’ 이○○ 이종격투기 선수가 경기 중 두차례 급소를 가격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당시 관중석에 있던 가수 박○○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10일 ‘이○○ 선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박○○ 씨가 실제로 이○○ 선수가 연속으로 로블로 맞고 쓰러졌을 때 분명 ‘빨리 일어나! XX야!’라고 흥분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선수가 로블로(낭심 공격)를 받고 쓰러졌을 때 상대방의 관중이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식의 조롱을 했으며, ○○FC의 부대표 박○○도 ‘일어나 XX야’라고 하자 옆자리에 있던 정○○ 대표가 제지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박○○ 씨 기부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했지 선수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대하듯 막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십몇 년 동안 격투기 경기를 봤지만 선수가 이렇게 취급 당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너무 실망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선수는 9일 서울 올림픽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FC 019’ 대회 1라운드에서 후쿠다와 대등하게 맞서며 스탠딩 타격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2라운드에서 후쿠다의 공격에 낭심을 맞고 쓰러졌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에 나선 이○○는 또 다시 후쿠다의 니키키에 낭심을 가격당했다. 이에 심판은 후쿠다에게 경고를 주며 경기무효를 선언했고, 급소를 두 번이나 타격받은 이○○는 끝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이○○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기 후 (집이 있는)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변에서 혈뇨(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배설되는 것)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FC 이○○ 박○○ 소식에 네티즌은 “○○FC 이○○ 박○○, 너무하네” “○○FC 이○○ 박○○, 낭심 맞은 걸 못 봤나” “○○FC 이○○ 박○○, 본인도 남자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대상보도2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0일자 뉴스면)

- 내 용 - ○○FC 이○○가 경기중 급소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당시 관중석에 있던 ○○FC 부대표 박○○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선수 인간이하의 대우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박○○ 씨가 실제로 이○○ 선수가 연속으로 로블로 맞고 쓰러졌을 때 분명 ‘빨리 일어나 XX야!’라고 흥분했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선수가 로블로(낭심 공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상대방의 관중이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식의 조롱을 했으며, ○○FC의 부대표 박○○도 ‘일어나 XX야’라고 하자 옆자리에 있던 정○○ 대표가 제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씨 기부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 거 안다. 하지만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했지 선수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대하듯 막대해서는 안된다”며 “십 몇 년동안 격투기 경기 봤지만 선수가 이렇게 개같은 꼴 다한 경우는 처음이다. 너무 실망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선수는 지난 9일 열린 ‘○○FC 19’ 대회에서 일본 후쿠다 리키 선수에게 두 차례 낭심을 공격당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FC 박○○, 실망이다”, “○○FC 박○○, 정말 욕을 했을까?”, “○○FC 박○○, 화가나도 너무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터넷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박○○ ○○FC 부대표 이○○에게 욕설 및 폭언한 적이 없어

나. 본문 : 본 매체는 지난 11월 11일에 인터넷 헤럴드 경제 홈페이지(헤럴드POP 및 헤럴드 Wealth&Health 면) 및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홈페이지에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또는 〈“로드FC 이○○, 낭심 심각한 부상에도 박○○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 XX야!’ 충격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로드FC 부대표인 박○○이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낭심을 가격 당한 이○○ 선수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해당 경기 중계 영상과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한 관객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부대표는 바로 이○○ 선수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박○○ ○○FC 부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본 매체는 지난 11월 11일자 「박○○, 낭심 맞은 이○○에 욕설...“일어나 XX야”」, 「○○FC 이○○, 낭심 심각한 부상에도 박○○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 XX야!” 충격발언」등 제목의 기사에서 ○○FC 부대표인 가수 박○○이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낭심을 가격당한 이○○ 선수에게 욕설 및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기중계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박○○ 부대표는 이○○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년 1월 7일 10:00부터 1월 9일 10:00까지 48시간 동안 <인터넷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뉴스 중 [헤럴드POP] 섹션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1. 0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박○○ ○○FC 부대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헤럴드POP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 례 17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울릉도 미륵산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4서울조정15977 · 15978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4. 12.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과거 울릉도에서 사망한 신청인 아들과 관련해 “구원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구원파 학생이 한 겨울에 안전장비도 없이 여름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했다”, “그 당시 죽은 남학생의 엄마가 구원파 신도여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을 대담 형태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망한 아들이 겨울옷에 등산용 겨울장화를 신고 그 위에 우의를 걸치고 작업했으며,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가족이나 지인 모두 몹시 슬퍼하였으며, 구원파 신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보도로 인해 망자의 명예와 유가족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망자 및 유족에 대한 과도한 표현 등으로 명예가 일부 실추되었음을 인정하고 유감표명을 담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액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N - 시사마이크 프로그램 ‘구원파 관련’ 보도 (2014년 6월 18일자 15:10)
- 내 용 - (전략)

- ▷ 김○○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유병언씨, 또 구원파들이 울릉도 땅의 5분의1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다니지 못하게 해서 주민들도 다니지 못하게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좀 그 얘기좀 듣겠습니다. 울릉도의 유○○ 목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유목사님?
- ▷ 유○○ : 예, 안녕하세요.
- ▷ 김○○ : 어제 저희 방송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못 들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유병언, 구원파 소유의 땅이 울릉도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 ▷ 유○○ : 예예.
- ▷ 김○○ : 그곳은 과거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곳인데 지금은 아예 다니지 못하게 막고,
- (▷ 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이 나물이라든지, 생계를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 (▷ 유○○ : 예, 맞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경찰서라든지, 이 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 ▷ 유○○ : 기존에 알고 계셨던 사실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사도 좀 하고, 그런데 진척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략>
- ▷ 김○○ : 어제 말씀하신 얘기 가운데, 좀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있는데, 올해 1월에 그쪽 유병언씨 구원파 소유의 땅에 미륵산 이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고로쇠를 채취하러 왔던 대학생 인가요? 그 한명이 추락해 사망했는데 그냥 쉬쉬하고 덮었다. 이거는 다시 재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유○○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언론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수사는, 어찌되었던 육지에서 학생들이 미륵산에 등산 왔다가 실족사 한 것으로 일찍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그 학생의 어머니가 구원파 신도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수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예외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는 순직했다라고 여기는지, 그런 과정에서 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동요나, 감흥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김○○ : 그냥 단순하게 미륵산 이라는 산에 육지에, 외지에 사는 10대 남학생이 와서 실족사 했다? 그런데 그 사람 엄마가 구원파 신도여서 수사하지 말아 달라, 경찰에?
- ▷ 유○○ : 예예
- ▷ 김○○ : 진짜 실족사예요? 등산에서..
- ▷ 유○○ : 일단, 울릉도 산 자체가 험합니다. 험하고, 악산이고, 나물 철이 되면, 올해같은 경우에도 봄에만 네 명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산인데, 겨울에, 그것도 눈이 많이 쌓여있는 산은 더더욱 위험하지요. 안전장비도 없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상황을 보면 그 학생이 여름 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작업했다라고 하는걸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곳에, 울릉도 산 지형도 모르는 학생들이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이 안되죠.
- ▷ 정○○ : 눈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 산길을 올랐고, 반팔 반바지에 올랐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마을 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겠어요?
- ▷ 유○○ : 주민 분들은 다 고로쇠를 채취하다가 떨어져, 추락사한 것으로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환경단체로 위장해서, 농활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그런지 요면 뭐 반년동안, 1년 동안, 관리인이 두세 명밖에 없으니까요, 이 넓은 지역에. 그 반년동안 쌓여있던 가축분뇨나 소똥도 베고, 못했던 것을 학생들이 와서 다 몰아서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겨울에는 고로쇠도 채취를 하고, 나물 철이 되면 나물도 해서 내보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 ▷ 정○○ : 유목사님께서 5년 지내셨다 그랬잖아요, 울릉도에서요. 그 5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 ▷ 김○○ : 다른 실족사 같은
- ▷ 유○○ : 다른 실족사는, 보통 나무를 캐나가, 주민들이 많이 사고 나는 그러한 경우는 있고요,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래서 해마다 여름하고 겨울이

되면 학생들이 몇 십 명씩 들어오는데, 이 사고가 딱 터지고 그 다음날 학생들이 다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 ▷ 정○○ : 그러면 매년 와서, 우선 수련회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 ▷ 유○○ : 자기네들끼리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수련회라기보다는 환경활동이라고, 그러니까 농활을 하는지,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처럼, 아침, 저녁으로 점호도 하고, 눈밭에서 체력단련 한다고 소리도 지르고, 발차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중략>
- ▷ 김○○ : ▷ 유 ○○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울릉도 땅에 5분의 1을 샀는데 이미 살때보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수십억 이상의 차익을 봤을 것이다. 그런데 저 실족사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 ▷ 이○ : 네, 저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울릉도도 이런 실족사가 일어났지만, 굴업도에서도
- ▷ 김○○ : 굴업도? 굴업도가 어디인가요?
- ▷ 이○ : 인천에, 굴업도에서도 이런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국녹색회의 중요한 인물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좀 쉬쉬하는 게 있고, 그 교인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 김○○ : 저기 지금 황○○ 소장님하고 민○○ 원장님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저렇게 되면 자기 신도들을 무슨 노예 부리듯이 울릉도로 보내고, 굴업도로 보내고, 신안 염전으로 보내가지고 노동 착취하는 것 아니에요?
- ▷ 황○○ : 원래 그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신도들의 돈과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수많은 신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가서 아직 개발이 되기 이전에, 개발이 될 만한 좋은 땅, 굴업도도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환경 반대운동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 환경단체를 만든 것도 굴업도 개발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정○○ : 그런데 사망사고 까지 일어났는데 쉬쉬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 ▷ 김○○ : 그 죽은 남학생의 엄마가 구원파 신도여서 수사하지 마라, 이런 소문이 돌았다 하잖아요.

- ▷ 민○○ : 구원과 엄마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조용조용 해주기를 요청해줬을 수도 있고..
- ▷ 김○○ : 아니, 자기아들이 등산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유병언 일가에게 바치기 위한 고로쇠를 채취하러 가서 실족사 했는데..
- ▷ 민○○ : 종교적으로 이단이던 아니던 간에, 종교적으로 하면 뭐 수혈도 거부하고 자식 죽어가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는 우리 상식의 생각을 뛰어 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 ▷ 김○○ : 이해가 되시는군요. 민원장님
- ▷ 민○○ : 수혈을 거부해서 자기 딸이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수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특정 종교에서.
- ▷ 김○○ : 근데 지금 문제는 이청 선생님의 말씀처럼 저게 울릉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굴업도에서도, 아마 좀 찾아보면 더 있을지도 몰라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MBN <시사마이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구원과 울릉도 추락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4년 6월 18일자 <시사마이크> 프로그램에서 울릉도에서 사망한 남학생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구원과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구원과 학생이 한 겨울에 안전장비도 없이 여름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했다”, “그 당시 죽은 남학생의 엄마가 구원과 신도여서 수사하지 마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사망한 남학생은 겨울 옷에 등산용 겨울장화를 신은 후 그 위에 우비를 입고 작업했으며, 사건 당시 가족이나 지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거나 유족 측에서 구원과 신도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1) 가. 제목 : 「구원파 울릉도 추락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2014년 6월 18일자 <시사마이크>에서 보도한 ‘울릉도에서 사망한 남학생 사연’과 관련해, 당시 사망한 남학생은 한 겨울에 여름장화를 신고 반팔 티셔츠와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 작업한 사실이 없으며, 사망한 남학생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남학생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았거나 구원파 신도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구원파 울릉도 추락사」 관련 보도로 인해 사망한 남학생 유족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2. 피신청인은 평일 오후 3시 10분에 방송하는 2015년 1월 21일자 ‘뉴스 BIG 5’ 프로그램 시작에 제1-1항의 보도문을, 말미에 제1-2항의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MBN(<http://www.mbn.co.kr/>)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015년 1월 19일 09:00부터 일주일 간 게재하고 이후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5년 1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3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거나 제4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제4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6.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1.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뉴스 BIG5 프로그램 『구원과 울릉도 추락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1일)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